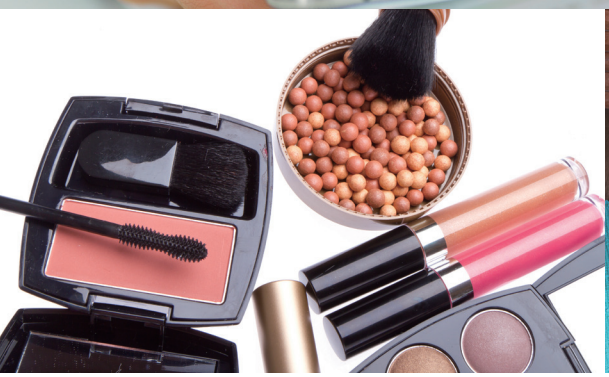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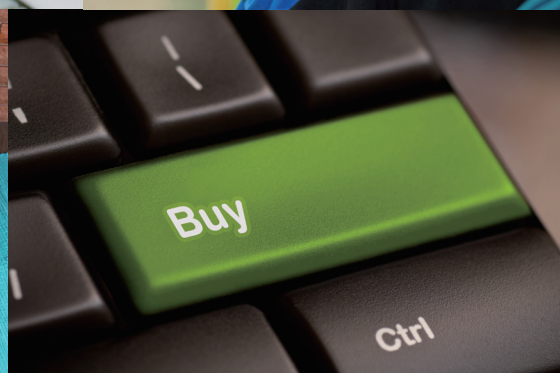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47-01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 품목분류 100選

2014. 9

관세청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1878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 품목분류 100選

2014. 9

관세청



# 發刊辭



전자상거래는 최근 5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13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14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직접구매를 시작했던 초창기 구매자들은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간단한 소품을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해외 사이트에 직접 가입하여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직접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물품의 해외 직접구매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 직접구매를 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또 '수입이 가능한 물품이냐'는 것입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물품 하나하나에 일관된 부호체계를 부여하는 것으로 어떤 품목번호(HSK)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수입요건확인 대상이 되는 등 수출입 통관의 근간이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해외 직구족이 품목분류에 대하여 알게 된다면 세율, 수입요건 등 해외 직구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품목분류 100選」을 발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국민들에게 알기 쉽도록 전자상거래, 즉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통계, 분석하여 가장 빈번히 수입된 수입물품을 위주로 100대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품목분류 및 세율 뿐 아니라 면세범위, 세율계산법, 반품 시 환급방법에까지 소개하여 해외 직구 시 소비자가 정확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해외 직접구매를 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 및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9월

관세청장 김 낙 회

# 더 싸게, 더 편하게, 더 빠르게

## – 해외 직구족, 무역의 소비자 전성시대를 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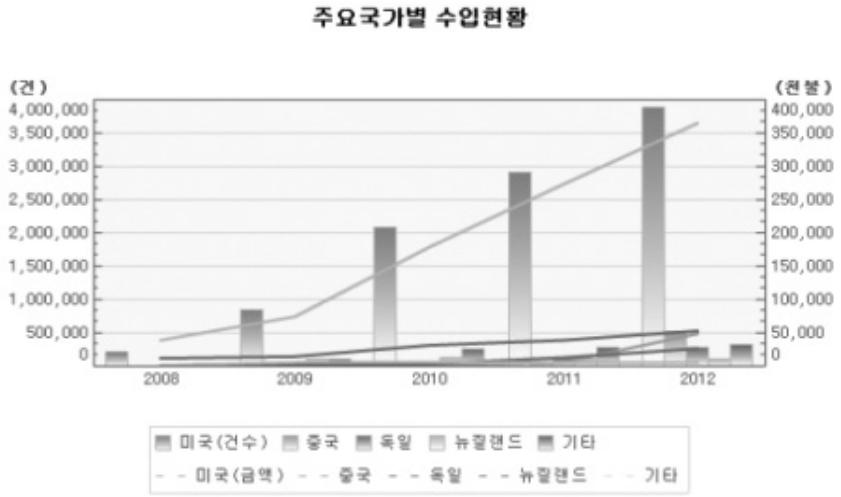
해외 인터넷 쇼핑(일명 해외직구)은 사상 최대 규모였던 작년에 비해서도 50% 이상 급증하는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5년 전자상거래 반입동향을 살펴보면 '09년 2,500건 1.6억불, '11년 5,600건 4.7억불, '13년 11,100건 10억불로 '09년에 비해 5배가량 늘어 시장규모 1조원을 이미 돌파했고 '14년 2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해외직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수입품이 국내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되는 현실에 대한 스마트 컨슈머들의 반란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 된 점, 전자결제와 국제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경험이 축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해외직구족의 최대 쇼핑국은 미국(74%)이 압도적이며 중국, 독일, 홍콩,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구매연령대는 2~30대가 전체구매의 70%이상을 차지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해외직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 · 신발(27%), 건강기능식품(14%), 화장품(8%), 핸드백 · 가방(8%)의 4대 품목이 전체구매의 60% 가량을 차지하여 건강 및 패션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다.




한 언론매체가 운동화 · TV · 커피머신 등 인기 공산품 5종의 유통채널별 가격을 조사한 결과, 100만원이 넘는 고가제품일수록 해외직접구매가 저렴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이 팔린 '55인치 풀HD TV'는 국내 온라인 장터 옥션에서 구매하면 183만원이었지만 미국 아마존닷컴과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면 147만원에 살 수 있었다. 배송비 · 관세 · 부가세까지 모두 합해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약20% 정도 저렴한 셈이다.

"100만원 넘는 고가제품, 해외 직접구매가 20% 저렴"(조선일보, '14.6.19)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직구 시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14.6.16.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14.6.16.부터 반입되는 물품부터는 소액(미화 100불 이하, 단,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품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한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이다.

또한 그동안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 지정되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직구물품의 통관절차는 더욱 간소화, 신속화 될 전망이다.

해외직구는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엄연한 수입행위인 만큼 주의도 요구된다.

위해식품류,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농림축수산물, 가짜상품 등은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으로 구매하더라도 통관이 불가능하며,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발 시 가산세가 적용될 뿐 아니라 범칙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건전한 해외직구는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절차 간소화 및 정보제공에는 더욱 힘쓸 계획이다.

# 목차

## 1부 해외직구 알고 보면 쉬워요 ~


1. 내가 구매한 제품 어떻게 수입될까? 13
2. 특송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하면 복잡한 수입신고도 PASS! 16
3. 소액물품은 관세부담 없어요 ~ 17
4. 복잡한 세금계산 정복하기 19
5. 간이세율 신청하기 21
6. EU · 미국 등 물품은 꼭 FTA 혜택 받자! 22
7. 반품한 경우 세금 돌려받기 26


## 2부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의 품목번호와 관세는?

**– 해외 직구 품목 100選 –**


1. 커피 32
2. 차류 34
3. 올리브유 37
4. 유아용품 – 화장품 · 세정제 38
5. 유아용품 – 조제식료품 39
6. 유아용품 – 일회용 기저귀 · 젖병 · 젖꼭지 41
7. 유아용품 – 유아용 의류 43
8. 유아용품 – 유모차 · 보행기 45
9. 시럽(Syrup) 47
10. 추잉검 49
11. 캔디류 51
12. 코코아 & 초콜릿 53
13. 비스킷 55
14. 잼류 57
15. 견과류 59
16. 주스류 61
17. 소스류 63
18. 건강기능식품 I 65
19. 건강기능식품 II 68
20. 건강기능식품 III 71
21. 로열젤리 조제품 73
22. 와인(Wine)과 와인용품 74
23. 식초 76
24. 화장품류 77
25. 두발용 제품류 80

# 목 차


26. 구강위생용품 ····· 82
27. 데오도란트 ····· 84
28. 제모제 ····· 85
29. 실내용 방향제 · 탈취제 ····· 86
30. 아로마 오일(아로마세러피용) ····· 87
31. 세정 제품류 ····· 88
32. 양초 ····· 90
33. 애완동물용품 ····· 91
34. 지갑 ····· 94
35. 가방 및 케이스 ····· 97
36. 벨트 ····· 100
37. 모피의류 ····· 102
38. 서적 ····· 104
39. 오버코트 · 반코트(편물제) ····· 105
40. 패딩점퍼 · 패딩조끼(직물제) ····· 107
41. 정장(직물제) ····· 110
42. 드레스 ····· 112
43. 치마 ····· 114
44. 긴바지 ····· 116
45. 셔츠 ····· 118
46. 블라우스 ····· 120
47. 티셔츠 ····· 122
48. 카디건 · 터틀넥 ····· 124
49. 지퍼 점퍼 ····· 125
50. 고어텍스 등산점퍼 ····· 126
51. 장갑류 ····· 127
52. 넥타이류 ····· 129
53. 손수건과 스카프류 ····· 131
54. 캠핑용품 ····· 133
55. 신발류 ····· 136
56. 모자 ····· 139
57. 양산 · 우산 ····· 142
58. 도자기제품 ····· 144
59. 유리제품 ····· 146
60. 액세서리류 ····· 148
61. 식탁 · 주방용품 – 플라스틱제 ····· 151
62. 식탁 · 주방용품 – 나무제 ····· 152
63. 식탁 · 주방용품 – 금속제 I ····· 153

64. 식탁 · 주방용품 – 금속제 II 155
65. 체중계, 가정용 저울 157
66. 프린터 158
67. 전동 공구 159
68. 노트북 컴퓨터 160
69. 컴퓨터 주변기기 161
70. 배터리 충전기 163
71. 가정용 진공청소기 164
72. 식품용 그라인더 165
73. 면도용품 166
74. 전기 커피메이커(가정용) 168
75. 전기다리미 170
76. 헤어드레싱 전기제품 172
77. 가정용 전열기기(토스터 · 오븐 · 그릴) 173
78. 스마트폰 174
79. 헤드셋 · 이어폰 175
80. DVD 플레이어 · 프로젝터 176
81. DVD · CD 178
82. 텔레비전(TV) 180
83. 가정형 전동식 재봉기 182
84. 자전거 183
85. 안경테 · 선글라스 · 고글 185
86. 카메라 187
87. 레이저 제모기, 레이저 피부관리기 189
88. 손목시계 190
89. 악기류 192
90. 전자악기류 194
91. 가구류 195
92. 쿠션 · 베게 · 방석 197
93. 완구류 199
94. 비디오 게임기 202
95. 골프용품 204
96. 스키용품 206
97. 야구용품 209
98. 라켓 211
99. 낚시용품 212
100. 만년필 · 사프펜슬 214

# 01

## 해외직구,
## 알고 보면 쉬워요

## 1. 내가 구매한 제품 어떻게 수입될까?

온라인 쇼핑은 인터넷에서 구매 · 결제하는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을 앉아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즐거움 때문에 순식간에 국민의 생활 한 켠에 자리를 잡았다. 해외직구도 온라인 쇼핑의 일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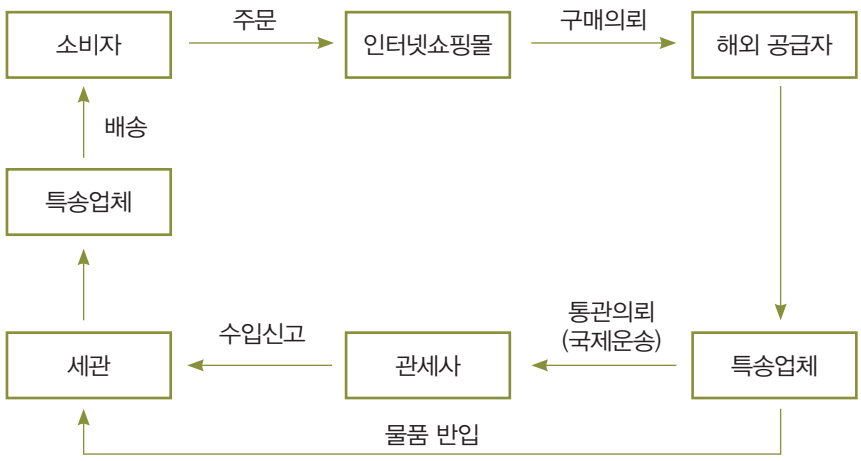
이렇게 편리한 온라인 쇼핑은 국경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과는 다른 점이 있다. 쇼핑한 제품을 내 손안에 받아보려면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것이다. 즉, 수입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려면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수입통관이라고 하는데 관세청은 물품을 들여오려는 자가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며, 수입이 금지된 물품인지, 관련 기관 추천이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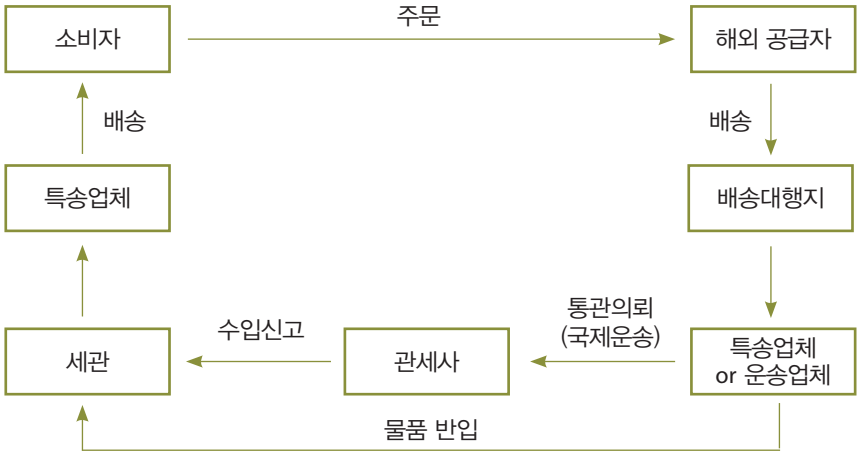
해외직구물품이 수입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주문 → 국제배송 → 국내도착 → 수입신고 → 관세 등 세금납부 → 국내배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수입통관인데 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주로 특급배송업체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배송업체가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해주고 구매자는 계산된 세금을 내기만 하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해외직구는 과거 구매대행방식에서 최근에는 직접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하여 배송업체를 선택하는 직접구매방식으로 진화했다. 구매대행방식이든 직접구매방식이든 통관절차는 동일하다.

### ① 구매대행 방식



### ② 직접구매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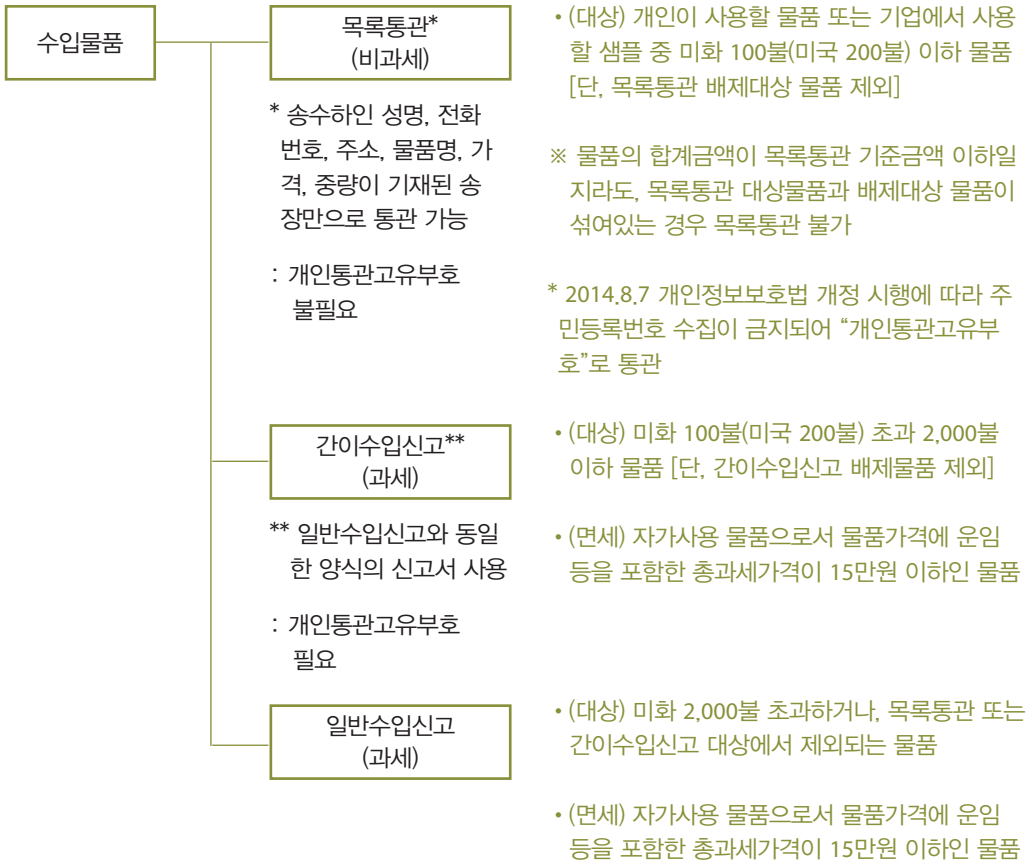



해외직구물품은 온라인쇼핑 즉, 전자상거래 물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보다 간편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첫째, 목록통관이다. 목록통관이란 복잡한 수입신고서 대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성명, 연락처,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입통관하는 것이다. 해외 쇼핑몰이 특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보낼 때 이런 자료를 붙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관세나 부과세가 면제된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0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다만,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일지라도,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이거나 목록통관 대상물품과 배제대상 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을 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 없다.

둘째, 간이수입신고이다. 간이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는 제출해야 하지만 각종 필수 제출서류는 생략해도 된다. 미화 100불 초과 2,000불 이하의 물품(단, 간이수입신고 배제물품 제외)은 첨부서류의 제출 없이 신고서의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사용할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에 운임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인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수입신고 시, 수입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2014.8.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목록통관이나 간이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수입신고서와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화 2,000불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여기에 해당되며, 개인이 사용할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에 운임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인 물품은 과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개인이 수입통관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가능하며 다음과 같다.

① 개인 직접 신청
– 인터넷통관포털(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주요 정보제공 서비스/개인통관고유부호신청」클릭

② 세관 발급 신청
–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개인용)*' 작성 후 권역별 본부세관에 방문 또는 FAX 신청(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직구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세금일 것이다. 직구물품은 고가의 해외배송비도 지불해야 하는데 관세, 부가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쇼핑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사실 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직구물품은 왜 구매자가 따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이 소비되는 국가, 즉 수입국의 정부가 수입자로부터 세금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매용이 아닌 내가 직접 쓸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물품가격(배송비 포함)이 15만원이하거나 목록통관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내가 해외직구한 제품의 관세율은 어떻게 될까? 수출입되는 모든 품목은 10단위 품목번호(HSK)로 구분된다. 품목번호가 정해지면, 관세율도 정해지고 식품검역, 수입금지품목 등 수입요건도 정해진다.

무역업체에 비해서 해외직구족은 직접 수입신고를 할 일이 적지만 관세율이나 수입절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해외직구족들도 내가 수입하는 물품의 세금을 미리 계산하거나 구매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도 품목번호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 특송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하면 복잡한 수입신고도 PASS ~!

### 가.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페덱스나 UPS와 같은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서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00불 이하(한-미 FTA 대상 물품은 200불 이하)물품은 목록 통관을 할 수 있다.

**일반 수입신고 대상물품**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⑤ 건강기능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 · 주류 · 담배류
⑧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⑩ 통관목록 중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⑪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다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목록통관을 할 수 없고, 일반수입신고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 나.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미화 1,000불이하)으로서, ①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고, ②수취인 주소와 성명이 명확하며, ③세액산출에 곤란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관장이 간이세율(5. 참조)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통관시킨다.

위의 요건 중 ③번이 미비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간이통관신청서와 세액산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인터넷, Fax, E-mail, 전화, 문자메시지 등 이용가능)받아서 간이세율(5. 참조)을 적용하여 통관시킨다.

**일반 수입신고 대상물품**

① 수출입제한 · 금지물품
② 세관장확인 대상물품(대외무역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수출입의 승인면제) [별표4]의 수입승인면제에 해당하지 않은 물품)
③ 회사물품, 판매용 물품
④ $1,000초과 구매물품
⑤ 500만원 초과 선물
⑥ 일반 수입신고를 신청한 물품

## 3. 소액물품은 관세부담 없어요 ~

직구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15만원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로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 면제한다.

나.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목록통관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한-미 FTA적용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미화 200불까지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미화 200불이 아닌 소액물품 면세기준인 15만원까지만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개인 소비용 인정기준〉

<table>
<tr><th>종류</th><th>품명</th><th>자가사용인정기준<br>(면세통관범위)</th><th>비고</th></tr>
<tr><td>농림수<br>축산물</td><td>참기름, 참깨, 꿀,<br>고사리, 버섯, 더덕<br>호두<br>잣<br>소, 돼지고기<br>육포<br>수산물<br>기타</td><td>각 5kg<br><br>5kg<br>1kg<br>각 10kg<br>5kg<br>각 5kg<br>각 5kg</td><td>○ 면세통관범위 초과 시 요건확인대상<br>(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td></tr>
<tr><td>한약재</td><td>인삼(수삼,백삼,<br>홍삼 등)<br>상황버섯<br>녹용<br>기타 한약재</td><td>합 300g<br><br>300g<br>검역후 150g<br>각 3kg</td><td>○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br>○ 면세통관범위 초과 시 요건확인대상</td></tr>
<tr><td colspan="2">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td><td></td><td>○ CITES규제대상</td></tr>
<tr><td colspan="2">VIAGRA 등 오 • 남용우려의약품</td><td></td><td>○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td></tr>
<tr><td colspan="2">건강기능식품</td><td>총6병</td><td rowspan="3">○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br><br>– CITES 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br>–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br>–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br><br>○ 면세통관범위를 초과 시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td></tr>
<tr><td colspan="2">의약품</td><td>총6병<br>(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td></tr>
<tr><td rowspan="2">생약<br>(한약)<br>제제</td><td>모발재생제<br>제조환<br>다편환, 인삼봉황<br>소염제<br>구심환<br>소갈환<br>활락환, 삼편환<br>백봉환, 우황청심환</td><td>100ml×2병<br>8g入×20병<br>10T×3갑<br>50T×3병<br>400T×3병<br>30T×3병<br>10알<br>30알</td></tr>
<tr><td>十全大補湯,蛇粉,鹿胎膏,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td><td></td><td>○ 약사법 대상</td></tr>
<tr><td>마약류</td><td colspan="2">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td><td>○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td></tr>
<tr><td>야생동물<br>관련제품</td><td colspan="2">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td><td>○ CITES규제대상</td></tr>
</table>

| | | | |
|---|---|---|---|
| 기호물품 | 주류<br>궐련<br>엽궐련<br>전자담배<br><br>기타담배<br>향수 | 1병(1l이하)<br>200개비<br>50개비<br>니코틴용액<br>20ml<br>250g<br>60ml×1병 | ○ 과세가격 15만원 초과 시 과세대상<br><br>○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 기타 |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br>○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 |

※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 4. 복잡한 세금계산 정복하기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된다. 관세는 평균적으로 8% 세율이 부과되지만 품목, 원산지 등에 따라 세율이 모두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을 제외하고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그 밖의 세목의 경우 부과의 목적에 따라 그 대상과 세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 관세에 부과되는 내국세 개요(자세한 사항은 해당법령 참조)

### 1) 부가가치세

- 과세대상 : 면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
- 세액계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타 내국세) × 10%

### 2) 개별소비세

- 과세대상 : 수입물품 중 향수, 보석 및 귀금속의 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가방 등
- 세액계산

  기준가격이 정해진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기준가격} × 20%

  기준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5~20%

### 3) 주세

- 과세대상 : 수입물품 중 주류
- 세액계산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5~72%

### 4) 교육세

- 과세대상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중 일부물품
- 세액계산 : 개별소비세액 × 15~30%

### 5) 농어촌특별세

- 과세대상 : 개별소비세법에 다른 과세대상 중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고급모피, 고급가구
- 세액계산 : 개별소비세액 × 10%

세율이 서로 다른 세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책에서는 각각의 세율에 다른 세금을 합산하여 수입신고가격 대비 전체세액의 비율을 구하여 제시하였다. 이것은 과세가격*(수입가격)에 대한 수입제세(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교통세, 부가세)의 비율을 말하며, 세종별로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종 세율을 단순히 합산한 것과는 다르다.

※ 관세의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ㅇ 물품가격: 현지 물품 구매가 및 현지 운송료를 포함한 모든 금액
  물품가격 = (현지가격 + 현지세금 + 현지운송료) × 고시환율
ㅇ 운임 : 해외에서 국내까지의 배송비
ㅇ 고시환율 : 세관에서 고시하는 전주 평균환율

관세 및 기타 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

예) 관세율 8%, 부가가치세 10%로서 과세가격 100,000원

ㅇ 과세가격 : 100,000원 ---------- ①
ㅇ 관세 : 100,000 × 8% = 8,000원 ---------- ②
ㅇ 부가세 : (① 100,000 + ② 8,000) × 10% = 10,800 ---- ③

[납부할 세액(합산세액)]

② 8,000 + ③ 10,800 = 18,800원 ⇒ 18.8%

### 2)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

예) 관세율 8%,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로서 과세가격 100,000원

ㅇ 과세가격 : 100,000원 ---------- ①
ㅇ 관세 : 100,000 × 8% = 8,000원 ---------- ②
ㅇ 개별소비세 : (① 100,000 + ② 8,000) × 5% = 5,400 ---------- ③
ㅇ 교육세 : ③ 5,400 × 30% = 1,620원 ---------- ④

○ 부가세 : (① 100,000 + ② 8,000 + ③ 5,400 + ④ 1,620) × 10% = 11,500 ----- ⑤

[납부할 세액(합산세액)]

② 8,000 + ③ 10,800 + ④ 1,620 + ⑤ 11,500 = 26,520원 ⇒ 26.52%

### 4)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경우

FTA 특혜 관세를 적용 시 기존 관세 대신에 FTA 특혜세율을 넣고 계산하면 된다.

예) 관세율 8%, 한-미 FTA 3%, 부가가치세 10%로서 과세가격 100,000원

○ 과세가격 : 100,000원 ---------- ①

○ FTA 관세 : 100,000 × 3% = 3,000원 ---------- ②

○ 부가세 : (① 100,000 + ② 3,000) × 10% = 10,300 ---- ③

[납부할 세액(합산세액)]

② 3,000 + ③ 10,300 = 13,300원 ⇒ 13.3%

## 5. 간이세율 신청하기

간이세율이란 여행자의 편의 증진 및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행자휴대품 · 우편물 등의 수입 시, 관세 · 특별소비세 등을 합산한 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통합세율을 말한다.

실제로 각각의 세율에 따라 일일이 계산하여 합한 금액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수입자의 적용신청이 필요하다.

간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이다.

품목별 간이세율은 다음과 같다.

### 〈간이세율〉

| 품 명 | 세 율(%)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 55 |
| 나. 보석 · 진주 · 별갑 · 산호 ·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고급 가방 | 37만 400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 다. 녹용 | 45 |
| 라. 방향용 화장품 | 35 |
| 마. 로얄제리 | 30 |
| 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 27 |
| 2.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 2.5 |

| |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br>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br>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30<br>25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br>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br>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 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을 제외한다) | 20 |

그렇지만 관세율이 무세이거나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나. 고가품
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6)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 또는 1조의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7) 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8) 화주가 수입 신고 시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

## 6. EU • 미국 등 물품은 꼭 FTA 혜택받자!

우리나라는 '14.8월 현재 10개의 FTA를 체결하고 그 중 9개가 발효되었다. 직구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 1)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받기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어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원산지 증명서 서식

가.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권고서식. 또는,

나.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기재한 서류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적용 가능

| | |
|---|---|
| ①항 관련 | •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br>– '성명'이외 동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되어 연락가능한 정보(예: E–mail, 전화번호)를 기재 |
| ③~④항 관련 | • '수출자'는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br>– '수출자'와 '생산자'중 하나의 항목은 반드시 기재 |
| ⑤항 관련 |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br>※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br>•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
| ⑥항 관련 | • 상품이 동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기재<br>(예시)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br>(예시) "These Goods are of U.S.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 ⑦항 관련 | •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
| ⑧항 관련 | • "원산지포괄증명"이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 |

##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Certificate of Origin
###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 | | |
|---|---|---|
| 1.Exporter (수출자) | Name (성명) | |
| | Address(주소) | |
| | Telephone (전화) | |
| | Fax (팩스) | |
| | E–mail (전자주소) | |

2.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기간)

YYYY (년) MM (월) DD (일) — YYYY (년) MM (월) DD (일)

From: __ __ __ __/__ __/__ __ (부터) To: __ __ __ __/__ __/__ __ (까지)

| | | |
|---|---|---|
| 3.Producer (생산자) | Name (성명) | |
| | Address(주소) | |
| | Telephone (전화) | |
| | Fax (팩스) | |
| | E–mail (전자주소) | |

| | | |
|---|---|---|
| 4.Importer (수입자) | Name (성명) | |
| | Address(주소) | |
| | Telephone (전화) | |
| | Fax (팩스) | |
| | E–mail (전자주소) | |

5 . 원 산 지 증 명 대 상 물 품 내 역

| Serial No. (연번) | Description of Good(s) (품명 · 규격) |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 HS2002 No. (품목번호 HS 6단위) | Preference Criterion1) (원산지결정기준) |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
|---|---|---|---|---|---|
| | | | | | |

6. Observations: (특이사항)

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___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
|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 Company (회사명) |
| Name: (작성자 성명) | Title (직위) |
| YYYY (년) MM (월) DD (일) __ __ __ __/__ __/__ __/ | Telephone : (전화번호) Fax: (팩스번호) |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 수입자, 생산자 란은 기재 생략 가능하며, 한글본과 영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수입물품 과세과격이 미화 1,000불 이하인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은 원산지 증명이 면제 되어 송품장이나 구매영수증 등에 원산국이 표시되어 있으면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 구입처에 요청하여 원산지 표시 문구를 송품장에 삽입해 줄 것을 요청(E–mail 등)
– 수입신고 시 관세사 또는 특송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FTA 관세혜택 요청하면서 원산지 표시 문구가 있는 송품장을 제출

○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향후 1년 이내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 기재된 원본의 송품장이나 구매영수증 등을 제시하시면 사후에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 2) 한–EU FTA협정세율 적용받기

○ 수출입금액(협정상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6,000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는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 이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해야 함
- ①란은 'customs authorisation No'없이 '인증번호'만 기재해도 인정
  (예) ~~ document (BE 74) declares that, ~~
- ③란은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 ④란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 원산지신고문안이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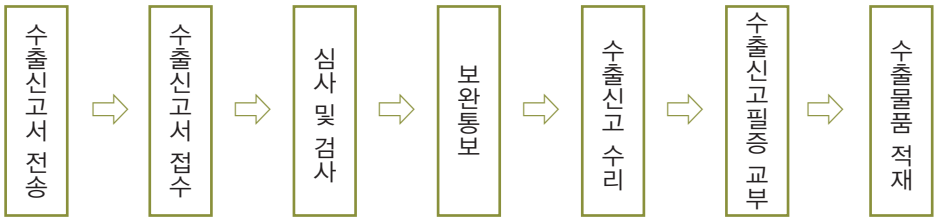
## 7. 반품한 경우 세금 돌려받기

### 1) 직구물품 반품을 위한 수출절차

○ 물품 수입 시 통관 대행한 특송업체, 관세사에게 문의하여 물품을 반송(수출)한다. 반송은 소정의 수출절차를 거쳐서 세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 개인이 직접 수출할 경우에는 먼저 세관에 개인고유부호를 신청하여 부호를 부여받아야한다. 수출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일명 UNI-PASS)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수출신고절차




① 수출신고인은 물품 적재 전까지 물품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
②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수출신고서 및 해당구비서류 제출
③ 형식적 요건심사 및 검사대상에 대한 검사 실시
④ 해당 수출 건에 대한 수출신고 수리(요건이 미비한 경우 보완 후 수리)
⑤ 수출신고필증 교부(자동수리 및 P/L 수리 건은 신청인이 직접 출력)
⑥ 수출신고수리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 선적(1년 범위내 기간연장 可)

UNI-PASS 가입절차

– 신청인은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에 접속하여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 신청서 작성
– 인터넷 통관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 후 작성한 이용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세관 민원담당부서에 제출
– 이용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용자 내역(사용자ID,성명등)

## 2) 수입 시 납부한 세금 환급받기

○ 계약상이 물품의 환급은 환급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에 전산 또는 서류 제출하여 부과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소액면세 물품으로 해외 직구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방법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의사를 취소하고 반품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일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

# 02

##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의 품목번호와 관세는?

# 품목분류란 ?

품목분류란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의 형상 · 기능 · 재질 · 가공 정도 등에 따라 국제협약과 관세법령에서 정한 품목분류표상 하나의 품목번호(code)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마트에서 바코드를 찍어서 물품의 가격이나 상세정보를 알 수 있듯이 품목번호가 정해지면 세율 · 수입요건 · 수입통계 등도 같이 결정된다.

품목번호는 국제협약에 따라 세계 공통으로 6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나라마다 공통된 언어가 없으면 상호 의사소통이 힘든 것과 같이 국제 거래되는 물품도 나라마다 다른 품목번호체계를 사용하면 상호 무역거래 소통이 힘들어 무역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으로 품목번호를 사용하면 국제무역상의 특정한 자료의 수집 · 비교 · 분석도 용이하고 마약 등 특정 물품의 국제사회 공동 대응 등의 장점도 있다.

그렇다면 품목번호의 체계는 어떻게 될까?

품목번호는 크게 동식물 · 식료품 · 섬유제품 · 금속제품 · 기계류 등 2단위 96개로 분류되며, 이하 중분류로는 국제 공통으로 4단위 1,224개 및 6단위 5,205개 번호를 사용하며, 각 나라는 사정에 따라 6단위 이하 세분하여 품목번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 12,243개 번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10단위 번호 마다 세율과 수입요건이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수입할 때 10단위 품목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제6204.62-1000호에 분류되는 '청바지'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2 04. 62 – 1000

| | | |
|---|---|---|
| ⟷ | 2단위 | 의류 |
| ⟷ | 4단위 | 여성용슈트 · 재킷 · 바지 |
| ⟷ | 6단위 | 면으로 만든 바지 |
| ⟷ | 10단위 | 청바지 |

# 01 커피류

## 물품 개요

커피는 커피나무 열매속의 씨앗(생두)을 볶고, 물로 추출하여 음용하는 기호식품으로서 커피를 추출하여 동결 건조한 '인스턴트 커피'와 '볶은 원두커피'가 주로 수입되고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볶은 원두커피는 HS 0901호에 분류되며, 인스턴트커피 및 커피믹스 스틱은 HS 2101호에 분류된다. 인스턴트커피는 커피나무 열매(커피콩)의 씨를 볶아서 분쇄한 다음, 증기 또는 열탕을 통과시켜 추출한 것을 열풍 중에 건조하거나 동결 건조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볶은 커피(원두 및 분쇄한 것) :** HSK 0901.2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1.4 | 3.2 | 5.5 | 2.6 | 1.6 | 8 |
| 2015년 | 0 | 0 | 0 | 0.7 | 1.6 | 5.0 | 1.3 | 0 | 8 |
| 2016년 | 0 | 0 | 0 | 0 | 0 | 4.5 | 0 | 0 | 8 |

*아세안(라오스, 필리핀, 태국) ⇒ 미양허

### 인스턴트 커피 : HSK 2101.11-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1.4 | 3.2 | - | 2.6 | 1.6 | 0 |
| 2015년 | 0 | 0 | 0 | 0.7 | 1.6 | - | 1.3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 | 0 | 0 | 0 |

*아세안(필리핀, 태국) ⇒ 미양허

### 인스턴트 커피 스틱 : HSK 2101.12-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1.4 | 3.2 | - | 2.6 | 1.6 | 5.3 |
| 2015년 | 0 | 0 | 0 | 0.7 | 1.6 | - | 1.3 | 0 | 4.0 |
| 2016년 | 0 | 0 | 0 | 0 | 0 | - | 0 | 0 | 2.6 |

*아세안(필리핀, 태국) ⇒ 미양허

## 참고사항

○ 인스턴트 커피를 유리병에 담은 것과 찻잔을 함께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경우, 관세율표상으로는 세트(Set)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인스턴트 커피(HS 2101호)'와 '도자기 잔(HS 6911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어, 2품목을 수입하게 된다.

○ 커피는 검역대상 물품으로서 일반 신고하여 검역을 필하고 수입할 수 있다.

# 02 차(茶)류

## 물품 개요

일반적으로 '차(茶)류'라고 하면 기호성의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물 등의 원료를 단독으로 또는 이들 2종 이상을 혼합한 것으로 물에 침출하여 음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는 녹차 · 홍차 · 보이차와 같은 차류와 캐모마일 · 둥글레 · 루이보스와 같은 각종 식물성 침출용 차가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수입 통관하는 경우 '차(茶)류'의 뜻은 식물학상의 '차류'에 한정된다. 즉, 녹차와 발효된 홍차, 후발효차(예: 보이차) 만이 '차류'에 해당된다. 녹차와 발효된 차(홍차, 보이차 등)를 용기에 담았거나 티백에 포장한 제품과 이들 제품에 향을 내기위한 소량의 재료(예: 자스민 꽃, 향 등)를 첨가한 것은 HS 0902호에 분류되며, 이들을 원료로 각종 재료를 혼합하제 조제한 제품은 HS 2102호에 분류된다.

반면, '차'로 알려진 식물성 침출차인 캐모마일 · 둥글레 · 루이보스는 HSK 1211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들 식물성 침출차가 혼합되어 판매될 경우에는 HSK 2106호에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 녹차(Green tea) 3kg 이하로 포장한 것 : HSK 0902.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513 | - | - | - | - | 10 | 575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 | - | - | - | 410.8 | - | 405.4 | 385.2 | 513.6 |
| 2015년 | - | - | - | - | 376.6 | - | 378.4 | 353.1 | 513.6 |
| 2016년 | - | - | - | - | 342.4 | - | 351.4 | 321 | 513.6 |

### 홍차(Black tea), 우롱차, 보이차 3kg 이하로 포장한 것 : HSK 0902.3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40 | - | - | - | - | 10 | 54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 | 7.3 | 0 | 36 | 16 | - | 405.4 | 24 | 40 |
| 2015년 | - | 3.6 | 0 | 36 | 8 | - | 378.4 | 20 | 40 |
| 2016년 | - | - | 0 | 36 | 0 | - | 351.4 | 16 | 40 |

### 현미 녹차 티백 : HSK 2101.20-9011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40 | - | - | - | - | 10 | 54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7.3 | 40 | 24 | 28 | - | 20 | 24 | 40 |
| 2015년 | 0 | 3.6 | 40 | 24 | 24 | - | 15 | 20 | 40 |
| 2016년 | 0 | - | 20 | 24 | 20 | - | 10 | 16 | 40 |

### 캐모마일, 둥글레, 루이보스 차 : HSK 1211.90-9099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 | 0 | - | 0 | 0 | 5.3 |
| 2015년 | 0 | 0 | 0 | - | 0 | - | 0 | 0 | 4.6 |
| 2016년 | 0 | 0 | 0 | - | 0 | - | 0 | 0 | 2.3 |

**식물성 침출차 혼합제품 :** HSK 2106.90-9099호

(예) 사과조각, 히비스커즈, 로즈힙피,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블루베리향 등으로 혼합한 것을 2kg 비닐백에 소매포장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 | 3.2 | – | 0 | 1.6 | 5.3 |
| 2015년 | 0 | 0.7 | 0 | – | 1.6 | – | 0 | 0 | 4 |
| 2016년 | 0 | 0 | 0 | – | 0 | – | 0 | 0 | 2.6 |

## 참고사항

○ '자스민차' 등으로 불리는 제품 중 어떤 것은 '홍차'에 자스민 잎을 소량 넣어 자스민 향을 첨가한 것으로 '홍차'에 분류되며 관세율이 차이가(8% → 40%)있으므로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한다.

○ 차(茶)는 검역대상 물품으로서 일반 신고하여 검역을 필하고 수입할 수 있다.

# 03 올리브유

## 물품 개요

올리브나무(감람나무)의 열매에 함유된 기름으로 압착법, 추출법으로 채유된 제품을 말한다. 노란색을 띤 녹색의 불건성유로서 지방질이 많아 의약이나 비누 · 화장품의 원료로 쓰며, 윤활유로 쓰기도 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올리브유'는 HS 1509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버진 올리브유'와 '정제한 올리브유'를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버진 올리브유'는 기름을 변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기계적 또는 물리적 수단(예: 압착)에 의해 얻는 기름으로 세척, 기우려 따르기, 원심분리, 여과 이외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정제한 올리브유'는 버진 올리브유로부터 기름 구조가 변성되지 않는 정제방법에 따라 얻은 기름이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버진올리브유 :** HSK 1509.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5.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 | 3.2 | 3 | 2.6 | 1.6 | 5.3 |
| 2015년 | 0 | 0 | 0 | – | 1.6 | 2 | 1.3 | 0 | 4 |
| 2016년 | 0 | 0 | 0 | – | 0 | 1 | 0 | 0 | 2.6 |

*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공화국 : 7.2%

# 04 유아용품 – 화장품 · 세정제

## 물품 개요

유아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세정제는 일반적으로 성인용에 비하여 자극적인 화학품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종류로는 보습제부터 피부접촉이 많은 부위가 짓무르지 않도록 하는 일명 베이비파우더와 썬블록 제품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아용 화장품은 유아용으로 제조 ·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유기농 또는 천연재료의 기초화장품이 유아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화장품이나 세정제는 HS 3304호와 HS 3307호에 각각 분류되며 이들 호에는 유아용의 것을 포함한다. HS 3304호에는 화장품을 입술화장용, 눈화장용, 매니큐어용, 기초화장용, 어린이용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베이비파우더의 경우 가루형태의 기타 화장품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유아용 화장품 및 세정제** (어린이용 제품류) HSK 3304.99–3000호
(베이비파우더) HSK 3304.91–2000호 (목욕용 세정제) HSK 3401.3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 | 0 | 0 | 0 |

* (싱가포르) 유아용 화장품의 경우 '14년 1.5%, '15년 0.7%, '16년 0%

# 05 유아용품 – 조제식료품

## 물품 개요

일반적인 식재료 외에 유아용 조제식료품으로는 이유식과 분유가 대표적이며 최근 육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농의 것을 선호하는 등 더욱 다양화 · 고급화하는 추세이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유아용 조제식료품으로서 이유식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성분에 따라 HS 1602호, HS 2005호, HS 2007호, HS 2104호에 분류되며, 조제분유는 HS 1901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이유식(곱게 균질화한 유아용 조제품으로 250g 이하 소매용 제품)**

〔육류로 만든 것〕 HSK 1602.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30 | – | – | – | – | 10 | 43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 | – | 30 | – | 24 | – | 22.5 | 22.5 | 30 |
| 2015년 | – | – | 30 | – | 22 | – | 20.6 | 20.6 | 30 |
| 2016년 | – | – | 24 | – | 20 | – | 18.7 | 18.7 | 30 |

〔유아용 퓨레콘(pureed corn)〕 HSK 2005.10-1000호

〔그 밖의 균질화한 채소〕 HSK 2005.1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20 | – | – | – | – | 10 | 32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3.6 | 0 | 18 | 8 | 13.7 | 6.6 | 8.5 | 16.3 |
| 2015년 | 0 | 1.8 | 0 | 18 | 4 | 12.5 | 3.3 | 5.7 | 14.5 |
| 2016년 | 0 | 0 | 0 | 18 | 0 | 11.2 | 0 | 2.8 | 12.7 |

〔과실이나 견과류로 만든 것〕 HSK 2007.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30 | – | – | – | – | 10 | 43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5.5 | 0 | 18 | 12 | – | 10 | 12.8 | 30 |
| 2015년 | 0 | 2.7 | 0 | 18 | 6 | – | 5 | 8.5 | 30 |
| 2016년 | 0 | 0 | 0 | 18 | 0 | – | 0 | 4.2 | 30 |

조제 분유(소매용) HSK 1901.10–101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36 | – | – | – | – | 10 | 49.6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21.8 | - | 36 | 28.8 | 25.2 | – | 22.9 | 21.6 | 36 |
| 2015년 | 18.2 | - | 36 | 28.8 | 21.6 | – | 19.6 | 18 | 36 |
| 2016년 | 14.6 | - | 28.8 | 28.8 | 18 | – | 16.3 | 14.4 | 36 |

## 참고사항

○ 조제분유는 15만원 이하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된다. 조제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서 검역기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확인을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다.

- 또한, 1회 5kg까지 한도 내에서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 06 유아용품 – 일회용 기저귀 젖병 · 젖꼭지



## 물품 개요

유아용 위생용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기저귀로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적으로 종이를 원재료로 한다. 그 밖에 유아용 위생용품으로 젖병, 젖꼭지 등은 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든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일회용기저귀는 관세율표상 HS 9619호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지제로 만든 것, 천으로 만든 것을 세분하고 있다. 젖병은 플라스틱제품으로서 HS 3926호에, 젖꼭지는 고무재료인 경우 HS 4014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 일회용 기저귀

(종이 재질로 만든 것) HSK 9619.00–101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0 | – | – | – | – | 10 | 10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HSK 9619.00–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HSK 9619.00–301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플라스틱제 젖병 :** HSK 3926.9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0 | 0 | 0 | 2 | 0 | 0 |
| 2015년 | 0 | 0.7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고무제 젖꼭지 :** HSK 4014.9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7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07 유아용품 – 유아용 의류



## 물품 개요

유아용 의류는 주로 천연섬유를 재료로 하여 편물제로 된 것이 많다. 턱받이, 장갑류, 타이츠 및 유아용 털실 신 등 다양한 제품을 포함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유아용 의류는 신장이 86㎝ 이하인 어린이용의 것을 말한다. 유아용 의류는 남아용의 것과 여아용의 것을 구분하지 않고 편물제의 경우 HS 6111호에, 직물제의 경우 HS 6209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유아용 의류**

**〔편물제의 것〕**

**면으로 만든 것 :** HSK 6111.20–1000호 **합성섬유로 만든 것 :** HSK 6111.30– 1000호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HSK 6111.90–1000호

**〔직물제의 것〕**

**면으로 만든 것:** HSK 6209.20–1000호 **합성섬유로 만든 것 :** HSK 6209.30–1000호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HSK 6209.90–1010호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HSK 6209.90–109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페루) 편물제로서 면으로 만든 것: '14년 2.6%, '15년 0%

# 08 유아용품 – 유모차 · 보행기



## 물품 개요

유모차는 유아를 태워서 밀거나 끌고 다니는 차로, 유럽에서는 perambulator 또는 pram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보통 baby carriage라고 한다. 보행기(walker)는 유아의 보행연습을 위한 것으로 네 발만 있거나, 두 발 두 바퀴로 되어 있거나, 몸 전체를 전부 매달 수 있도록 한 것 등 다양하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유모차와 유아용 보행기는 관세율표상 HS 8715호, HS 9403호에 각각 분류된다. HS 8715호의 유모차는 접는 식인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추었고 일반적으로 손으로 미는 형식이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유모차 :** HSK 8715.0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5 | – | – | – | – | 10 | 15.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유아용 보행기 : HSK 9403.7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0 | – | – | – | – | 10 | 10 | - |

# 09 시럽(Syrup)



## 물품 개요

시럽은 설탕 등 당류를 물에 녹여 끓여서 만든 액상의 물품을 말한다. 용도에 따라 향을 넣은 시럽도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당시럽은 HS 1702호의 '당(Sugars)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여 만든 당시럽은 HS 2106호에 분류하고 있다. 당류에 코코아, 식염, 향료 등으로 만든 초콜릿 시럽의 경우 HS 1806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메이플 시럽 :** HSK 1702.20–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 | 0 | - | 3.2 | 5.5 | 0 | 1.6 | 6.5 |
| 2015년 | 0 | - | 0 | - | 1.6 | 5.0 | 0 | 0 | 5.8 |
| 2016년 | 0 | - | 0 | - | 0 | 4.5 | 0 | 0 | 5 |

**당시럽(가향 또는 착색한 것) :** HSK 2106.90-20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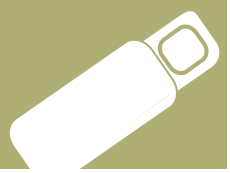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 | 3.2 | 5.5 | 0 | 1.6 | 6.5 |
| 2015년 | 0 | 0 | 0 | - | 1.6 | 5.0 | 0 | 0 | 5.8 |
| 2016년 | 0 | 0 | 0 | - | 0 | 4.5 | 0 | 0 | 5 |

*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공화국 : **6.4%**

# 10 추잉검(Chewing gum)



## 물품 개요

추잉검은 껌베이스(천연 또는 합성수지)에 가소제, 충전제, 감미료, 착향료를 배합한 것으로 씹는 동안 감미료와 향료 등이 녹아서 씹는 기분을 즐기는 물품이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추잉검은 감미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데, 설탕 등 당류로 만들어진 추잉검은 HS 1704호의 '설탕과자'로 분류하고, '자일리톨'과 같은 당알코올로 만들어진 추잉검은 HS 2106호의 '그 밖의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추잉검(당류 첨가) :** HSK 1704.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4 | 3.2 | 3 | 2.6 | 1.6 | 5.3 |
| 2015년 | 0 | 0 | 0 | 4 | 1.6 | 2 | 1.3 | 0 | 4 |
| 2016년 | 0 | 0 | 0 | 4 | 0 | 1 | 0 | 0 | 2.6 |

### 추잉검(자일리톨 첨가) : HSK 2106.90-9099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 | 3.2 | - | 0 | 1.6 | 5.3 |
| 2015년 | 0 | 0.7 | 0 | - | 1.6 | - | 0 | 0 | 4 |
| 2016년 | 0 | 0 | 0 | - | 0 | - | 0 | 0 | 2.6 |

# 11 캔디류



## 물품 개요

'캔디류'는 식물성 원료나 설탕 등 당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가공한 것으로 드롭스, 캐러멜, 알사탕 등을 말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캔디류'는 HS 1704호에 분류되고 있다. 캔디류의 한 종류인 '드롭스'란 설탕에 향료를 섞어 굳혀 만든 것이며, '캐러멜'은 설탕 · 우유 등을 섞어 고아서 만든 캔디를 말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드롭스 :** HSK 1704.90-201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4.8 | 3.2 | 0 | 2.6 | 1.6 | 5.3 |
| 2015년 | 0 | 0 | 0 | 4.8 | 1.6 | 0 | 1.3 | 0 | 4 |
| 2016년 | 0 | 0 | 0 | 4.8 | 0 | 0 | 0 | 0 | 2.6 |

* 필리핀 : 적용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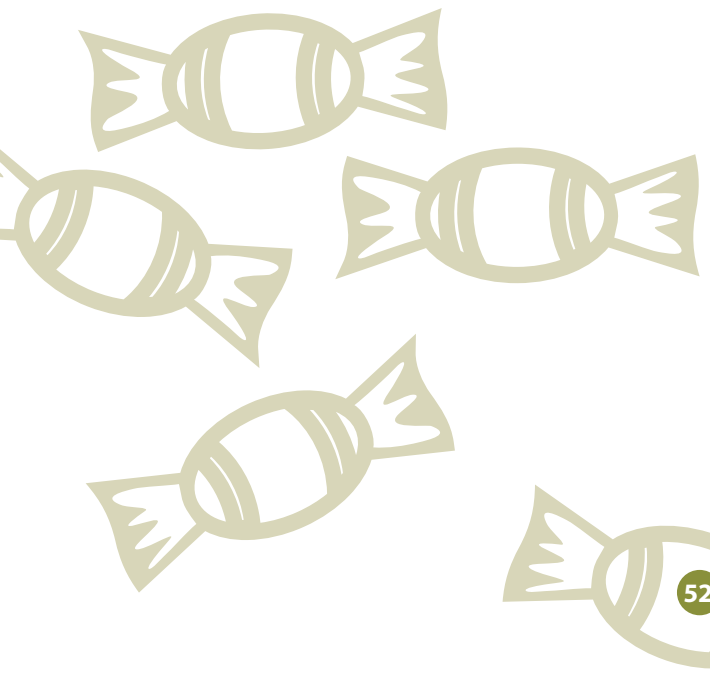
**캐러멜 :** HSK 1704.90–202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4.8 | 3.2 | 3 | 2.6 | 1.6 | 6.5 |
| 2015년 | 0 | 0 | 0 | 4.8 | 1.6 | 2 | 1.3 | 0 | 5.8 |
| 2016년 | 0 | 0 | 0 | 4.8 | 0 | 1 | 0 | 0 | 5 |

* 필리핀 : 적용배제



# 12 코코아 & 초콜릿



## 물품 개요

카카오 열매를 볶아 분쇄한 후 코코아 버터를 일부 제거한 것을 코코아라고 하며, 코코아 페이스트에 설탕, 향 등 그 밖의 재료를 첨가하여 만든 것이 초콜릿 제품이다.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종류로는 물에 타먹는 분말상의 '핫초코'제품이나 선물용으로서 '여러 모양의 블럭상 초콜릿 제품을 모아놓은 제품'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설탕을 첨가한 코코아 분말'이나 '초콜릿 제품'은 모두 HS 1806호에 분류된다. 다만 '화이트초콜릿(코코아버터, 설탕, 분유로 조제된 것)'은 HS 1704호로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코코아분말(설탕첨가된 것) :** HSK 1806.10-0000호

(예) 예: 핫초코, 코코아차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3.2 | 5.5 | 0 | 1.6 | 5.6 |
| 2015년 | 0 | 0 | 0 | 0 | 1.6 | 5.0 | 0 | 0 | 5.6 |
| 2016년 | 0 | 0 | 0 | 0 | 0 | 4.5 | 0 | 0 | 5.6 |

### 바, 블록상의 초콜릿 제품

**(속을 다른 것으로 채운 것) :** HSK 1806.31–1000호 **(속을 채우지 않은 것) :** HSK 1806.32–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4.8 | 3.2 | 3 | 2.6 | 1.6 | 5.3 |
| 2015년 | 0 | 0 | 0 | 4.8 | 1.6 | 2 | 1.3 | 0 | 4 |
| 2016년 | 0 | 0 | 0 | 4.8 | 0 | 1 | 0 | 0 | 2.6 |

**화이트 초콜릿 제품 :** HSK 1704.9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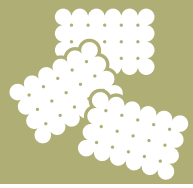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4.8 | 3.2 | 5.5 | 2.6 | 1.6 | 5.3 |
| 2015년 | 0 | 0 | 0 | 4.8 | 1.6 | 5.0 | 1.3 | 0 | 4 |
| 2016년 | 0 | 0 | 0 | 4.8 | 0 | 4.5 | 0 | 0 | 2.6 |

* 필리핀: 미양허

## 참고사항

○ 초콜릿을 입힌 비스킷(예: 초코파이)의 경우에는 초콜릿 조제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HS 1905호 '베이커리 제품'으로 분류된다.

# 13 비스킷(Biscuits)



## 물품 개요

비스킷은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지방, 우유, 버터, 당분, 향료 등을 섞어서 반죽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틀에 구워낸 마른과자를 말한다. 비스킷류로는 건빵, 비스킷, 쿠키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비스킷은 HS 1905호에 분류되며, '스위트 비스킷(가당 비스킷)'과 '그 밖의 비스킷(무가당 비스킷)'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스위트 비스킷 :** HSK 1905.3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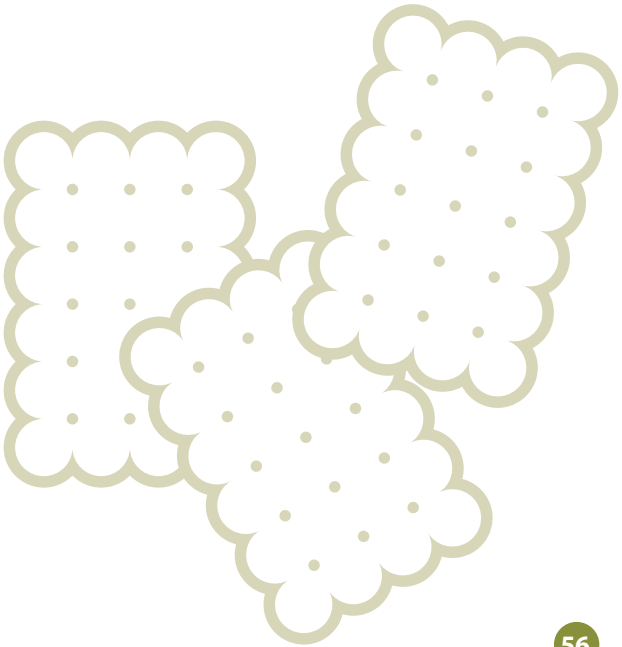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4.8 | 3.2 | 5.5 | 2.6 | 0 | 5.3 |
| 2015년 | 0 | 0 | 0 | 4.8 | 1.6 | 5.0 | 1.3 | 0 | 4 |
| 2016년 | 0 | 0 | 0 | 4.8 | 0 | 4.5 | 0 | 01 | 2.6 |

**비스킷(무가당) :** HSK 1905.90-104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5 | – | – | – | – | 10 | 15.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4.8 | 3.2 | 5.5 | 2.6 | 0 | 5.3 |
| 2015년 | 0 | 0 | 0 | 4.8 | 1.6 | 5.0 | 1.3 | 0 | 4 |
| 2016년 | 0 | 0 | 0 | 4.8 | 0 | 4.5 | 0 | 01 | 2.6 |



# 14 잼류(Jams)

## 물품 개요

과일류 또는 채소류를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또는 시럽화 한 것으로 잼, 마말레이드를 말한다. '마말레이드'는 주로 감귤류의 주스와 과육으로 만든 잼을 말하며 과일의 껍질까지도 잘라 넣어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과일을 으깨지 않고 통째 설탕을 졸여서 만든 것은 '프리저브'라고 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잼을 '원형의 과실, 과실의 과육 또는 채소(예: 호박, 가지)에 대략 동량의 설탕을 넣고 끓여서 만들며 냉각하면 적당한 굳기를 갖게 되며 과실의 조각을 함유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관세율표상 잼류는 '감귤류의 것(HS 2007.91)'과 '기타(HS 2007.99)'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잼(감귤류) :** HSK 2007.91-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30 | – | – | – | – | 10 | 43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5.5 | 20 | 24 | 21 | - | 10 | 18 | 30 |
| 2015년 | 0 | 2.7 | 20 | 24 | 18 | - | 5 | 15 | 30 |
| 2016년 | 0 | 0 | 5 | 24 | 15 | - | 0 | 12 | 30 |

**잼(그 밖의 종류) :** HSK 2007.91-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30 | – | – | – | – | 10 | 43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5.5 | 30 | 24 | 21 | - | 15.0 | 12.8 | 22.5 |
| 2015년 | 0 | 2.7 | 30 | 24 | 18 | - | 11.2 | 8.5 | 18.7 |
| 2016년 | 0 | 0 | 24 | 24 | 15 | - | 7.5 | 4.2 | 15 |

## 참고사항

○ 오렌지, 오렌지 박피, 설탕, 펙틴을 가열 조리 · 농축하여 만드는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감귤류의 잼'과 같은 HSK 코드에 분류되며,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 15 견과류(Nuts)



## 물품 개요

주요 견과류로는 아몬드, 땅콩,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이 있으며 볶은 것과 튀기거나 볶아서 조미한 견과류가 주로 수입되고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볶거나 볶아서 조미한 견과류와 땅콩을 분쇄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만든 빵 토핑용 제품은 관세율표상 HS 2008호에 분류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볶은 땅콩 :** HSK 2008.11-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3.9 | – | – | – | – | 10 | 80.29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 | 11.6 | 63.9 | - | 44.7 | - | 40.6 | 47.9 | 63.9 |
| 2015년 | - | 5.8 | 63.9 | - | 38.3 | - | 34.8 | 43.9 | 63.9 |
| 2016년 | - | 0 | 51.1 | - | 31.9 | - | 29 | 39.9 | 63.9 |

## 볶은 아몬드 또는 볶은 견과류(혼합물) : HSK 2008.19–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45 | – | – | – | – | 10 | 59.5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8.2 | 0 | - | 31.5 | - | 22.5 | 19.2 | 33.7 |
| 2015년 | 0 | 4.1 | 0 | - | 27 | - | 16.8 | 12.8 | 28.1 |
| 2016년 | 0 | 0 | 0 | - | 22.5 | - | 11.2 | 6.4 | 22.5 |

* 스위스 : **27%**

# 16 주스류



## 물품 개요

'주스'에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가 있다. 주스는 일반적으로 과실이나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압축방법에는 분쇄하지 않고 하는 방법, 분쇄하여 하는 방법 및 수증기로 처리한 후 압착하는 방법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주스'는 HS 2009호에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프룬주스(과실주스) :** HSK 2009.89-109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50 | – | – | – | – | 10 | 65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9.1 | 50 | - | 35 | - | 25 | 21.4 | 40.9 |
| 2015년 | 0 | 4.6 | 50 | - | 30 | - | 18.7 | 14.2 | 36.3 |
| 2016년 | 0 | 0 | 40 | - | 25 | - | 12.5 | 7.1 | 31.8 |

* 스위스 : **40%**

** (참고) 미국 : (크란베리 및 자두) 20% – 10% – 0% 순 감소

**레드비트주스(채소주스)** : HSK 2009.89-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30 | – | – | – | – | 10 | 43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 | 0 | - | 21 | - | 10 | 6 | 24.5 |
| 2015년 | 0 | - | 0 | - | 18 | - | 5 | 0 | 21.8 |
| 2016년 | 0 | - | 0 | - | 15 | - | 0 | 0 | 19 |

# 17 소스류



## 물품 개요

'소스'는 향신료, 채소, 과실, 설탕, 식초, 겨자, 식물유, 향미료 등 다양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으로서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거나 맛을 돋우기 위하여 음식에 곁들여 먹는 제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소스류'로는 마요네즈, 샐러드드레싱, 간장, 고추장, 우스터소스, 셀러리염, 버섯소스, Bolognaise가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대부분의 '소스류'는 HS 2103호에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토마토케찹 :** HSK 2103.2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4.8 | 3.2 | 5.5 | 0 | 1.6 | 0 |
| 2015년 | 0 | 0 | 0 | 4.8 | 1.6 | 5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4.8 | 0 | 4.5 | 0 | 0 | 0 |

**인스턴트카레 :** HSK 2103.90–902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4.8 | 18 | - | 15.0 | 9 | 45 |
| 2015년 | 0 | 0 | 0 | 4.8 | 9 | - | 7.5 | 0 | 45 |
| 2016년 | 0 | 0 | 0 | 4.8 | 0 | - | 0 | 0 | 45 |

* 고추 • 마늘 • 양파 또는 생강 함량 **20%** 이상이거나 합이 **40%**이상인 소스: **27%**

# 18 건강기능식품 I (Food supplements)

## 물품 개요

삶이 풍요로워 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식생활이 건강유지에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거나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기능성으로 나누면 생리활성기능식품, 특정기능식품, 영양소 공급 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 생리활성기능이란 신진대사기능, 건강증진 · 유지, 체질개선, 체력증진, 생리활성을 말하며, 이러한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는 효소 함유 제품, 식물 추출물 함유 제품,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에 "건강보조식품"으로 따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 제품의 구성 성분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HS code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원료 혼합된 경우 주로 HS 2106호에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프로폴리스추출물(알코올함유)조제품** : HSK 2106.90–9080호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각종 나무로부터 모은 다양한 수액과 꽃에서 모은 꽃가루에 꿀벌 자신의 밀납 등 분비물을 이용하여 만든 물질이다. 프로폴리스는 구강에서 항균작용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 및 면역증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프로폴리스를 알코올로 추출한 후 글리세린을 혼합한 갈색 불투명 액(에탄올 약 31%)을 스포이트가 있는 갈색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30㎖)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30 | – | – | – | – | 10 | 43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5.5 | 0 | - | 12 | - | 10 | 12.8 | 24.5 |
| 2015년 | 0 | 2.7 | 0 | - | 6 | - | 5 | 8.5 | 21.8 |
| 2016년 | 0 | 0 | 0 | - | 0 | - | 0 | 4.2 | 19 |

**프로폴리스함유조제품 :** HSK 2106.90–9099호

(예) 프로폴리스 추출물, 토코페롤, 유지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점조액상을 젤라틴 캡슐에 넣어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60캡슐/병)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 | 3.2 | - | 0 | 1.6 | 5.3 |
| 2015년 | 0 | 0.7 | 0 | - | 1.6 | - | 0 | 0 | 4 |
| 2016년 | 0 | 0 | 0 | - | 0 | - | 0 | 0 | 2.6 |

**효소함유 조제품 :** HSK 2106.90–9099호

곡류, 곡물의 배아, 과실 또는 채소류에 식용 미생물을 배양시켜 만든 재료로 조제한 것

(예) 대두, 밀, 등겨, 배아 등을 누룩으로 발효한 후 녹차, 유자, 율무, 참기름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황녹색계 분말을 3g씩 알루미늄포에 포장한 것 120포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 | 3.2 | - | 0 | 1.6 | 5.3 |
| 2015년 | 0 | 0.7 | 0 | - | 1.6 | - | 0 | 0 | 4 |
| 2016년 | 0 | 0 | 0 | - | 0 | - | 0 | 0 | 2.6 |

## 참고사항

○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조제품은 건강보조식품에 해당되지 않고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약사법상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수입될 수 있다.

○ 해외에서는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성분의 위해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거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제품도 있다.

○ 성기능 개선으로 사용되는 이카린 · 실데나필 · 타다라필, 불법 다이어트 원료로 사용되는 시부트라민 · 요힘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성분이다.

○ 현재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비타민 제제 등)은 6병까지 통관허용하고 있으나 6병을 초과한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한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수입하여야한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 확인을 면제할 수도 있다.

# 19 건강기능식품 II (Food supplements)

## 물품 개요

건강기능식품을 기능성으로 나누면 생리활성기능식품, 특정기능식품, 영양소 공급 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특정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화분 제품, EPA/DHA함유 제품, 유산균함유 제품, 스쿠알렌 제품, 키토산함유 제품, 옥타코사놀 함유 제품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EPA/DHA가 함유된 어유제품은 '오메가-3'라고도 알려진 식품으로 단일어종의 경우 HS 1504.20-0000호의 '어유'에 분류되고, 혼합어종의 경우 HSK 1517.90-9000호의 '유지 조제품'에 분류되며, EPA/DHA함량을 지방산을 이용해 만든 경우(EE형이라고 함) HSK 2106.90-9099호의 '그 밖의 조제식품'에 분류하고 있다.
스쿠알렌 제품의 경우도 순수한 스쿠알렌을 캡슐에 담은 것은 HSK 2901.90-9000호(기본관세 5%, FTA적용시 관세 0%, 부가세 10%)의 '불포화 탄화수소'으로 분류되는 반면, 토코페롤과 같은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캡슐에 담은 것은 HSK 2106.90-9099호의 '그 밖의 조제식품'에 분류되므로 성분 함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키토산 제품의 경우 대부분 키토산을 단독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식품을 원료로 혼합하여 만든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들은 HSK 2106.90-9099호의 '그 밖의 조제식품'에 분류된다.
옥타코사놀 함유 제품은 '폴리코사놀'로도 알려져 있는 물품으로 사탕수수로부터 추출하여 얻어진 제품으로서 지구력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HSK 3823.70-9090호(기본관세 5%, FTA적용시 관세 0%, 부가세 10%)의 '지방성 알코올 혼합물'에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 화분함유 조제품 : HSK 2106.90-9099호

피부건강에 도움이 되며, 건강 증진 및 유지, 신진대사 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섭취 시 꽃가루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 화분(30%), 율무, 알팔파, 박하잎, 토란가루, 생강, 당귀, 감초, 계피, 귤껍질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 분말 500㎎을 캡슐화하여 100캡슐을 수지제 병에 소매포장한 것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 | 3.2 | - | 0 | 1.6 | 5.3 |
| 2015년 | 0 | 0.7 | 0 | - | 1.6 | - | 0 | 0 | 4 |
| 2016년 | 0 | 0 | 0 | - | 0 | - | 0 | 0 | 2.6 |

### 키토산함유 조제품 : HSK 2106.90-9099호

키토산은 갑각류(게, 새우 등)의 껍질, 연체류(오징어, 갑오징어 등)의 뼈로부터 탈단백, 탈칼슘화하여 얻은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만든 것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된다.

(예) 키토산 64.9%, 쌀겨 17.5%등으로 혼합된 황갈색분말 770㎎을 젤라틴캡슐에 충전하여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 (30캡슐/병)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 | 3.2 | - | 0 | 1.6 | 5.3 |
| 2015년 | 0 | 0.7 | 0 | - | 1.6 | - | 0 | 0 | 4 |
| 2016년 | 0 | 0 | 0 | - | 0 | - | 0 | 0 | 2.6 |

### 오메가-3 함유된 어유제품(단일어종) : HSK 1504.20-0000호

혈중 중성지질이 개선되며,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

(예) 연어유 1400㎎을 젤라틴 캡슐에 넣어 병에 소매포장(300캡슐/병)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3 | – | – | – | – | 10 | 13.3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1.2 | 0 | 1.0 | 0.6 | 0 |
| 2015년 | 0 | 0 | 0 | 0 | 0.6 | 0 | 0.5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오메가–3 함유된 어유제품(혼합어종) :** HSK 2106.90–9099호

혈중 중성지질이 개선되며,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

(예) 연어유 1,400㎎을 젤라틴 캡슐에 넣어 병에 소매포장(300캡슐/병)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 | 3.2 | - | 2.0 | 1.6 | 6.5 |
| 2015년 | 0 | 0 | 0 | - | 1.6 | - | 0 | 0 | 5.8 |
| 2016년 | 0 | 0 | 0 | - | 0 | - | 0 | 0 | 5.0 |

# 20 건강기능식품 III (Food supplements)

## 물품 개요

건강기능식품을 기능성으로 나누면 생리활성기능식품, 특정기능식품, 영양소 공급 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
영양소 공급 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은 영양보급, 영양불균형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서 비타민 조제품, 스피루리나 · 클로렐라 제품, 효모 제품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비타민 조제품은 주로 HS 2106호의 '그 밖의 조제식품'에 분류되고 있으며, 스피루리나 · 클로렐라와 같은 단세포 미생물은 HS 2102호의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비타민 조제품 :** HSK 2106.90–9099호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비타민 원료로는 시각과 관련이 있는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 칼슘과 인의 흡수에 이용되는 비타민 D,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 등이 있다.

(예)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 각종비타민류, 니코틴산아미드, 피리독신염산염, 판토텐산칼슘, 엽산, 구연산칼슘, 구연산철, 황산망간, 염화칼슘, 산화마그네슘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Tablet 120정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내용량 89g)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 | 3.2 | - | 0 | 1.6 | 5.3 |
| 2015년 | 0 | 0.7 | 0 | - | 1.6 | - | 0 | 0 | 4 |
| 2016년 | 0 | 0 | 0 | - | 0 | - | 0 | 0 | 2.6 |

### 스피루리나 • 클로렐라 제품(Tablet)

〔클로렐라〕 HSK 2102.20–3010호 〔스피루리나〕 HSK 2102.20–4010호

스피루니나 클로렐라 제품은 각 조류를 건조하여 제조한 것으로 엽록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제품은 피부건강, 항산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1) 건조 클로렐라로 구성된 녹색 tablet을 유리병에 소매포장(내용량 1500정)
(예2) Spirulina를 tablet으로 성형하여 갈색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6.4 | 3.2 | 5.5 | 0 | 1.6 | 6.5 |
| 2015년 | 0 | 0 | 0 | 6.4 | 1.6 | 5.0 | 0 | 0 | 5.8 |
| 2016년 | 0 | 0 | 0 | 6.4 | 0 | 4.5 | 0 | 0 | 5 |

## 참고사항

○ ‘비타민 식품’의 경우 의약품으로서의 ‘비타민 제제’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제제’는 HS 3004.50호(기본 8% 또는 FTA 적용시 0%, 부가세 10%)에 분류되고 있으며 수입 시 약사법을 적용받아 수입된다.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CENTRUM SILVER”와 같은 것이 있다.

# 21 로열젤리 조제품



## 물품 개요

로열젤리는 꿀벌 중 일벌이 유충을 기르는 시간에만 타선(타선)이 포육선(포육선)으로 발달하여 분비되는 유상물질로서 일벌의 유충에게 4일간만 먹이고 주로 여왕벌을 기르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강장 · 강정 · 영양제, 피로 회복, 갱년기 장애, 노화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로열젤리 조제품은 HS 2106.90호의 '그 밖의 조제식료품'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로열젤리 조제품 :** HSK 2106.90-9091호

(예) 로얄제리(약 70%), 포도당, 섬유소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정(282㎎) 30개를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로열젤리함량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50%이상 | 기본 8 | 7 | – | 30 | – | 10 | 29.6 | 30 |
| 50%미만 | 기본 8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 | 0 | - | 5.6 | - | 5.0 | 4.8 | 8 |
| 2015년 | 0 | - | 0 | - | 4.8 | - | 4.3 | 4 | 8 |
| 2016년 | 0 | - | 0 | - | 4 | - | 3.6 | 3.2 | 8 |

## 참고사항

○ 개별소비세 해당품목 :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50%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22 와인(Wine)과 와인용품



## 물품 개요

포도를 으깨어 알코올 발효시켜 만든 와인(포도주)에는 껍질 채 만든 적포도주와 청포도 또는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백포도주가 있다.
'샴페인'으로 알려진 발포성 포도주(Sparkling wine)도 있는데 프랑스 상빠뉴 지역에서 만드는 발포성 포도주를 '샴페인'이라고 한데서 유래되었다.
와인용품으로는 와인오프너, 와인잔, 와인 디캔터, 스토퍼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포도주는 HS 2204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종류로는 적포도주와 백포도주 뿐 아니라 알코올을 강화시킨 포도주, 발포성 포도주(Sparkling wine)도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발포성 포도주 :** HSK 2204.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협정 15 | – | 30 | 10 | – | 10 | 68.25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 | 0 | - | 0 | 5.6 | 0 | 3 | 12.7 |
| 2015년 | 0 | - | 0 | - | 0 | 3.8 | 0 | 0 | 10.9 |
| 2016년 | 0 | - | 0 | - | 0 | 1.9 | 0 | 0 | 9.5 |

### 포도주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적포도주〕 HSK 2204.21-1000호 〔백포도주〕 HSK 2204.21-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협정 15 | – | 30 | 10 | – | 10 | 68.25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7 | 0 | - | 0 | 10.3 | 0 | 3 | 12.7 |
| 2015년 | 0 | 1.4 | 0 | - | 0 | 9.4 | 0 | 0 | 10.9 |
| 2016년 | 0 | 0 | 0 | - | 0 | 8.4 | 0 | 0 | 9.5 |

* 스위스의 경우 2.7%(2014), 1.4%(2015), 0%(2016년부터)의 FTA 특혜관세 부과됨

### 와인오프너 • 코르커 : HSK 8210.00-5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반입수량에 따른 세액 산출 요령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1병)

-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된다.

※ 주세(30%), 교육세(주세의 10%)가 부과되어 총 33%의 세금을 내야한다.

○ 과세가격 15만원초과 1병 이상, 과세가격 15만원이하 2병 이상

-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모두 과세

※ 관세(15%), 주세(30%), 교육세(주세의 10%), 부가가치세가 모두 부과되어 68.25%를 내야한다.

# 23 식초

## 물품 개요

식초는 여러 가지 당류 또는 전분용액을 알코올 발효한 것으로부터 식초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초산발효를 시켜 얻은 초산 용액(양조식초)이다. 때로는 합성하여 만드는 경우도 있다. 주로 신맛을 내기 때문에 음식의 조미료로 사용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식초는 HS 2209호에 분류된다. HS 2209호에는 양조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품'이 분류되는데, 초산수용액의 경우 초산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HS 2915호의 초산으로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양조식초(예 : 발사믹 식초)** HSK 2209.0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4 | 3.2 | 3 | 2.6 | 1.6 | 5.3 |
| 2015년 | 0 | 0 | 0 | 4 | 1.6 | 2 | 1.3 | 0 | 4 |
| 2016년 | 0 | 0 | 0 | 4 | 0 | 1 | 0 | 0 | 2.6 |

**참고사항** ㅇ '발사믹 식초'란 포도와 와인을 숙성시켜 만든 식초이다. 색은 검고 맛은 새콤하며 드레싱 소스로 적합하다.

# 24 화장품(Cosmetic)류



## 물품 개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수입되는 주요 화장품의 종류로는 '기초화장품류', '메이크업 제품류', '향수'가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화장품류는 주로 제33류의 '화장품류'에 분류된다. '향수'는 HS 3303호에 분류되고, 각종 화장품은 주로 HS 3304호에 분류된다. HS 3304호에 분류되는 각종 화장품으로는 '입술화장용 제품', '눈화장용 제품', '매니큐어용 제품', '기초화장품류', '메이크업용 제품류'가 있다. 주로 립스틱, 아이섀도, 네일 에나멜, 베이비파우더, 스킨, 로션, 크림, 메이크업베이스 등의 물품이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향수 :** HSK 3303.00-1000호

(예) 오데 코롱, 오데 뜨왈렛, 오데 퍼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7 | - | 30 | 10 | 10 | 28.63 | 3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7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립스틱 : HSK 3304.1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베이비파우더 : HSK 3304.1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초화장용 제품류 : HSK 3304.99-1000호

(예)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마사지 팩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6.5 | 0 | 0 | 5.6 | 0 | 2.6 | 0 | 3.2 |
| 2015년 | 0 | 6.5 | 0 | 0 | 4.8 | 0 | 1.3 | 0 | 1.6 |
| 2016년 | 0 | 6.5 | 0 | 0 | 4.0 | 0 | 0 | 0 | 0 |

### 메이크업화장용 제품류 : HSK 3304.99-2000호

(예) 메이크업 베이스, 크림파운데이션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6.5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6.5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6.5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액체 상태의 '목욕 세정제(예: 바디워시)'는 관세율표에서는 '화장품류(제33류)'에 분류되지 않고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 조제품'에 해당되어 HSK 3401.30-0000호에 분류된다.

○ 향수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가격과 상관없이 목록통관에서 배제되고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정식 수입신고가 되더라도 구입목적이 자가 사용이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며 60*ml* 한 병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미백 · 주름개선 · 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등은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된다. 따라서 상기 기술한 종류의 화장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친 후 수입할 수 있다.

# 25 두발용 제품류



## 물품 개요

주요 두발용 제품으로는 샴푸와 린스가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두발용 제품류'는 HS 3305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샴푸와 린스 뿐 아니라 퍼머넌트 웨이빙용 제품류와 헤어래커, 헤어크림 등이 이 호에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샴푸 :** HSK 3305.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5 | - | - | - | - | 10 | 15.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5 | 8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5 | 8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5 | 5 | 0 | 0 | 0 | 0 | 0 | 0 |

**헤어린스 :** HSK 3305.9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5 | - | - | - | - | 10 | 15.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5 | 8 | 0 | 0 | 0 | 0 | 0 | 3.2 |
| 2015년 | 0 | 5 | 8 | 0 | 0 | 0 | 0 | 0 | 1.6 |
| 2016년 | 0 | 5 | 5 | 0 | 0 | 0 | 0 | 0 | 0 |

# 26 구강위생용품(Articles for dental)



## 물품 개요

주요 구강위생용품으로는 칫솔, 치약, 치실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구강용품은 제품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 '치약'이나 '치실(덴탈 플로스)'은 HS 3306.20호에 분류되며, '칫솔'은 HS 9603호에 분류되고, '전동칫솔'은 HS 8509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치약 :** HSK 3306.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칫솔 :** HSK 9603.2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3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2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 | 0 | 0 | 0 |

**전동칫솔 :** HSK 8509.8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치실**

**〔나일론의 것, 강력사나 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70데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 HSK 3306.20–1011호 **〔나일론의 것, 강력사나 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7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HSK 3306.20–1019호
**〔나일론의 것,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 HSK 3306.20–102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치실(기타) :** HSK 3306.2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7 데오도란트



## 물품 개요

방취제 · 탈취제, 혹은 비위를 상하게 하는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는 것으로 불쾌한 체취의 분비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화장료. 수렴작용에 의하여 땀의 분비를 억제한다든지, 살균작용에 의하여 땀냄새나 암내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시킨다든지, 불쾌한 냄새를 향기로 방취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들 방취 · 제한제로는 로션타입, 스프레이 타입, 파우더 스프레이 타입, 프레스드 파우더 타입 등이 있으며 겨드랑이 밑 등의 땀이 많이 나는 부분에 사용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데오도란트는 인체용 탈취제 및 땀 억제제로서 HS 3307호에 분류된다. HS 3307호에는 인체용 탈취제를 포함하여 면도용 제품류, 목욕용 조제품, 제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 실내용 조제 탈취제 등이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데오도란트 :** HSK 3307.2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8 제모제



## 물품 개요

크림이나 액체 형태로, 성분은 대개 유화발륨 · 유화스트론치움 등의 유화물과 치오글리콜산이다. 이러한 성분은 털의 수분을 증가시켜 탄력을 없애 뜯어지기 쉽게 한다. 개인에 따라 사용부위에 따라 효능에는 차이가 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제모제는 HS 3307호에 분류된다. HS 3307호는 제모제를 포함하여 면도용 제품류, 인체용 탈취제, 목욕용 조제품, 실내용 조제 탈취제 등이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제모제 :** HSK 3307.9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9 실내용 방향제 · 탈취제



## 물품 개요

탈취제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물리 흡착에 의한 탈취제로서 대표적인 것이 활성탄, 실리카겔, 활성 백토이며, 화학적 작용에 의한 탈취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과망간산 칼륨 수용액, 표백분 수용액 등이 있다. 거실, 화장실, 자동차 등 실내용 탈취제 또는 방향제는 액체나 고체 형태로 시중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실내용 방향 조제품 또는 탈취 조제품(Preparations for perfuming or deodorizing rooms)은 HS 3307호에 분류된다. HS 3307호는 실내용 탈취제 및 방향제를 포함하여 면도용 제품류, 인체용 탈취제욕 등이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실내용 방향제 • 탈취제**

〔아가바티(aga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HSK 3307.41-0000호

〔기타〕 HSK 3307.49-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30 아로마 오일(아로마세러피용)



## 물품 개요

아로마(aroma)는 '향기' 또는 '방향'을 뜻하며 사람에게 이로운 식물의 향기 또는 이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정유(精油) 상태로 가공한 방향(芳香) 물질을 말한다. 아로마는 특별한 효능이 있는 식물의 꽃이나 잎, 줄기, 열매, 뿌리 등에서 추출한 정유(精油, 에센셜오일)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다. 아로마를 이용한 향기치료 또는 향기요법을 아로마세러피(aroma therapy)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대체의학으로 부각되고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식물에서 채취한 정유(精油, 에센셜오일)를 기제로 한 아로마 오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은 기본적으로 용도에 따라 분류(예: 향수, 화장품, 두발용품, 구강용품 등)하고 있으며, 특히 향기요법에 사용되는 아로마테라피 오일의 경우 HS 3307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아로마테라피 오일(소매포장된 것) :** HSK 3307.90–9000호

(예) Cajuput oil, Clove oil, Eucalyptus oil, Mint oil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 10㎖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아로마세러피에 사용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31 세정 제품류



## 물품 개요

세정제품은 주로 기름과 친화적인 친유성과 물과 친화적인 친수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기름을 떼어내어 물로 씻어 세정이 되는 계면활성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비누, 바디 워시, 샤워 젤, 세탁용 세제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정제품은 주로 제34류의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조제세제"로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화장 비누 :** HSK 3401.11-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8 | 0 | 3.2 | 0 | 2.6 | 0 | 0 |
| 2015년 | 0 | 0 | 8 | 0 | 1.6 | 0 | 1.3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0 | 0 | 0 | 0 |

**바디 워시 :** HSK 3401.3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세탁세제 • 주방세제 :** HSK 3402.2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5 | - | - | - | - | 10 | 15.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섬유유연제 :** HSK 3809.9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상식 코너

**섬유유연제 원리**

일반적으로 세탁용 세제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세탁후 헹구어도 옷에 음이온 계면활성제 성분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섬유유연제”는 양이온 계면활성제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유연제의 양이온(+) 계면활성제와 세탁물에 남아 있는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만나 중성으로 변하면서 왁스와 같은 성분으로 변하게 된다. 이 성분이 고르게 섬유에 코팅이 되면서, 부드러워지며 전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32 양초(Candle)



## 물품 개요

양초는 보통 우지, 스테아린, 파라핀 왁스나 그 밖의 왁스를 주성분으로 만든다. 개인전자상거래(일명 해외직구)에서는 주로 허브향이 있는 양초가 거래되고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양초는 장식, 착색을 하거나, 향기를 가지더라도 HS 3406호의 "양초"에 분류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양초 :** HSK 3406.0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모든 양초가 HS 3406호의 "양초(Candle)"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항-천식약'으로 사용되는 양초는 HS 3004호의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훈증 소독을 위해 황으로 처리한 양초는 HS 3306호의 양초로 분류되지 않고 HS 3808호의 "살충, 살균제"로 분류되고 있다.

# 33 애완동물용품(Pet supplies)

## 물품 개요

애완동물용품으로는 애완용 의류, 목줄, 사료, 동물용 화장품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애완용 의류, 목줄은 HS 4201호에 분류되고 있다. 소매용 포장된 개나 고양이 사료는 HS 2309.10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크림 · 로션 · 샴푸와 같은 애완동물용 화장품은 HS 3307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애완용 의류 :** HSK 4201.00-909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애완용 목줄 :** HSK 4201.00-903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개 • 고양이 사료(소매포장)**

〔개 사료〕 HSK 2309.10–1000호 〔고양이 사료〕 HSK 2309.10–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5 | - | - | - | - | 10 | 15.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1.9 | 0 | 0 | 3.3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동물용 화장품 :** HSK 3307.9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동물사료는 대부분 가축의 생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함에 따라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의 매개 물질이 혼입될 우려가 많고 생산과정에서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사료와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수입검역) 규정에 의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 검역대상 애완동물 사료: 단백질류 및 유지류(우지, 돈지 등)가 함유된 제품

- 육포, 계란분말, 어분, 우모분, 제각분, 육분, 육골분, 혈분, 육가공부산물, 도축 및 가금 도축부산물, 동물성 단백질 혼합사료, 수지박, 동물성발효사료, 우지, 돈지, 양지, 닭기름 등

○ 애완동물사료의 수입검역 요건

- 허용조건: 반추동물유래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사료
- 수입요건: 반추동물유래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수출국 정부 발행 검역증명서 구비
- 수입검역: 반추동물유래단백질 함유 여부 검사* 실시

  * (반추유래단백질 함유여부 검사) 최초 수입 시 및 동일한 제품의 경우 매년 1회 추가 실시
- 검사기관: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중앙분석센타

애완동물사료에 포함되어서는 않되는 품목 및 수입금지지역

| 수입금지 성분 | 수입금지 지역 |
|---|---|
| – 반추동물의 뼈 · 뿔 등<br>–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육골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혈당,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 단백질(Hydrolysed protein), 가금설 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Feathermeal), 건조 굳기름, 어분, 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 젤라틴 및 혼합물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칼, 프랑스, 노르웨이,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슬로바이카,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유고, 크로아티아, 폴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체코,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 미국, 브라질(35개 국가) |

○ 수입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대표전화: 031-467-1700)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구매하려는 애완동물사료가 수입이 가능한지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 34 지갑(Wallet, billfold)



## 물품 개요

지갑은 현금, 신용카드, 신분증, 명함과 같은 개인용품을 가지고 다닐 때 사용되는 작고 납작한 케이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갑은 가죽이나 섬유재료로 만들어진다. 지갑은 종류에 따라 장지갑, 반지갑, 머니클립, 카드지갑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지갑'이라는 품명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HS 4202.3호의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HS 4202.3호 아래 HSK 10단위에 사용 재료에 따라 가죽제품, 플라스틱제품, 섬유재료제품, 그 밖의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 가죽지갑

〔뱀 가죽〕 HSK 4202.31-1010호 〔도마뱀 가죽〕 HSK 4202.31-1020호

〔악어 가죽〕 HSK 4202.31-1030호 〔캉가루 가죽〕 HSK 4202.31-105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가죽지갑 〔기타 가죽〕 : HSK 4202.31-109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플라스틱(합성피혁)지갑

〔PVC제〕 HSK 4202.32-1010호 〔기타 재료〕 HSK 4202.32-109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3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2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 | 0 | 0 | 0 |

### 섬유재료 지갑 : HSK 4202.32-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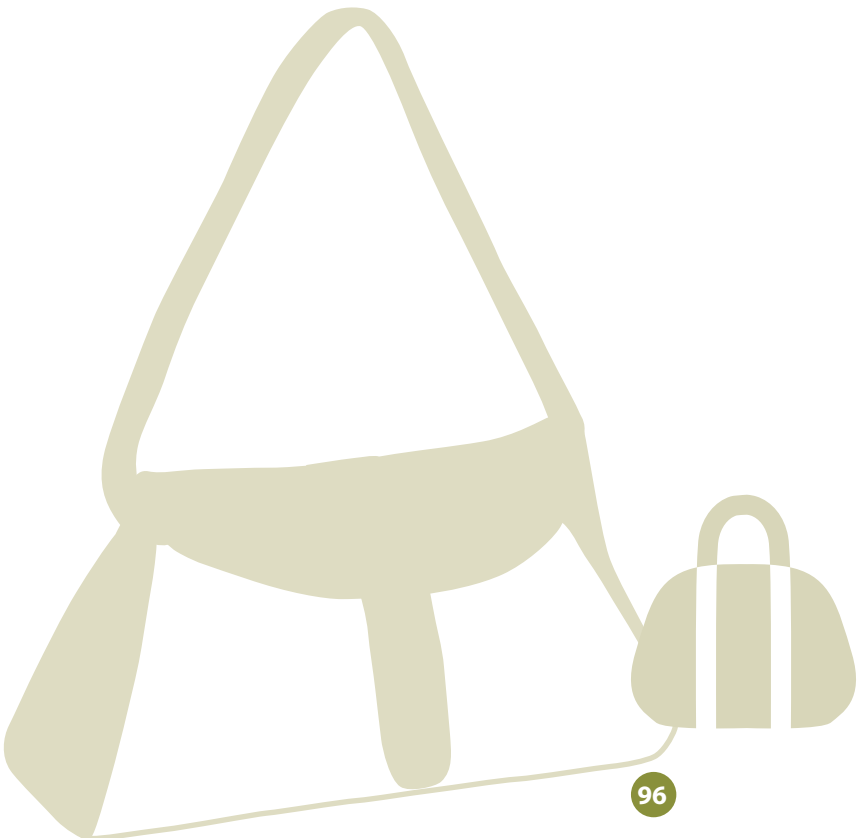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3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2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 | 0 | 0 | 0 |

## 참고사항

○ 고급지갑(개당 가격이 200만원초과인 것)의 경우 개별소비세대상이며, 과세가격의 20%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한다.

〈세금 합산 예〉 A: 37만 400원 + 185만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예시금액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300만원 | 기본 8 | 20 | – | 30 | – | 10 | 30.62 | A |
| 500만원 | | | | | | | 38.25 | |
| 800만원 | | | | | | | 42.53 | |



# 35 가방 및 케이스



## 물품 개요

가방은 사전적 의미로는 물건을 넣어 들고 다니기에 간편하도록 만든 기구로서 기본적으로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트렁크, 슈트케이스에서부터 각종 케이스류(공구가방,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 등), 지갑, 쇼핑백, 포켓용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가방 및 케이스류는 HS 4202호에 분류된다. 트렁크 · 슈트케이스 · 서류가방, 핸드백,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그 밖의 물품이 종류별로 재질에 따라 가죽으로 만든 것, 플라스틱이나 천으로 만든 것, 기타로 만든 것이 각각의 호에 분류된다. 다만,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 등이 특정한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내용물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트렁크 • 슈트케이스 • 서류가방**

〔가죽제의 것〕

**– 뱀 가죽으로 만든 것:** HSK 4202.11–1010호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HSK 4202.11–1020호
**악어가죽으로 만든 것:** HSK 4202.11–1030호 **장어 가죽으로 만든 것:** HSK 4202.11–1040호
**캉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HSK 4202.11–1050호 **기타 가죽으로 만든 것:** HSK 4202.11–1090호
**컴포지션 레더로 만든 것:** HSK 4202.11–2000호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HSK 4202.11–3000호

〔플라스틱 • 섬유재료의 것〕

– PVC로 만든 것: HSK 4202.12–1010호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HSK 4202.12–1020호,
기타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것: HSK 4202.12–1090호 섬유재료로 만든 것: HSK 4202.12–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핸드백 (숄더 스트랩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함)

〔가죽제의 것〕

– 뱀 가죽으로 만든 것: HSK 4202.21–1010호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HSK 4202.21–1020호
악어가죽으로 만든 것: HSK 4202.21–1030호 장어 가죽으로 만든 것: HSK 4202.21–1040호
캉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HSK 4202.21–1050호 기타 가죽으로 만든 것: HSK 4202.21–1090호
컴포지션 레더로 만든 것: HSK 4202.21–2000호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HSK 4202.21–3000호

〔플라스틱 • 섬유재료의 것〕

– PVC로 만든 것: HSK 4202.22–1010호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HSK 4202.22–1020호
기타 플라스틱제의 것: HSK 4202.22–1090호 섬유재료로 만든 것: HSK 4202.22–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HSK 4202.22–1090호), 섬유재료로 만든 것(HSK 4202.22–2000호)의 경우
'14년 3%, '15년 2%, '16년 1%, '17년 0%

## 참고사항

○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2014.1.1부터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고급 가방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수입가방의 가격이 원화로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한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세금 합산 예〉 A: 37만 400원 + 185만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예시금액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300만원 | 기본 8 | 20 | – | 30 | – | 10 | 30.62 | A |
| 500만원 | | | | | | | 38.25 | |
| 800만원 | | | | | | | 42.53 | |

* 개별소비세 =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 **20%**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30%**

# 36 벨트(Belts)



## 물품 개요

벨트는 허리선에 묶은 밴드로서 의복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벨트는 섬유재료로 제조된 경우는 편물의 경우 제61류, 직물의 경우 제62류로 분류되고 있으나, 가죽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경우는 플라스틱제품(제39류)나 가죽제품(제42류)으로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벨트(가죽)**

〔밴 가죽〕 HSK 4203.30-1010호 〔장어 가죽〕 HSK 4203.30-204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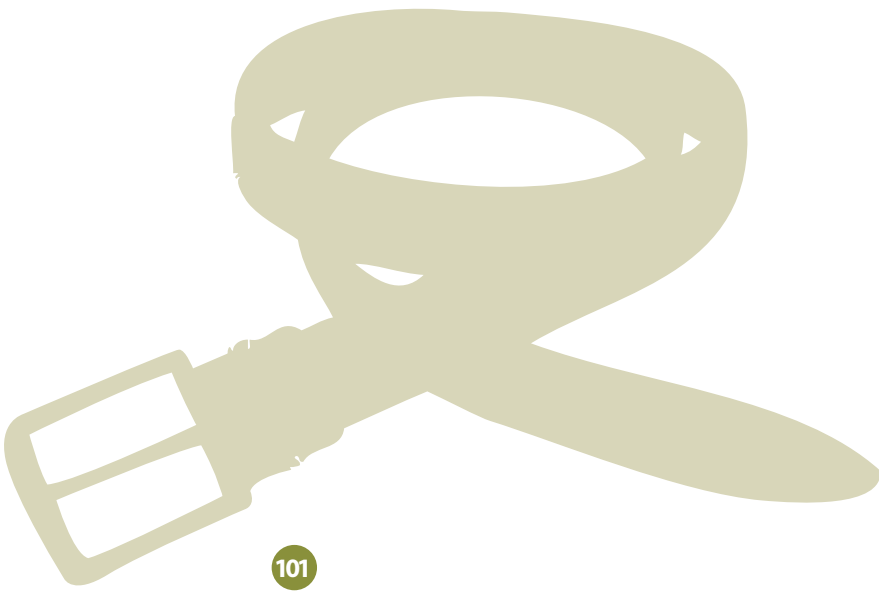
## 벨트(가죽)

〔악어 가죽〕 HSK 4203.30-1030호 〔기타 가죽〕 HSK 4203.30-109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37 모피의류



## 물품 개요

모피의류는 동물의 털을 표면으로 한 방한용 의류로서 보온효과가 가장 좋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피의류에는 동물의 원피를 유연처리하여 얻은 천연모피로 제조한 '천연모피의류'와 방직용 섬유(양모, 고운털, 합성섬유)를 가죽 또는 직물에다 모피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접착 또는 봉합하여 만든 인조모피로 제조한 '인조 모피의류'로 나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천연 모피의류'는 HS 4303.10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인조 모피의류'는 HS 4304.00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 천연모피의류

〔밍크〕 HSK 4303.10-1100호 〔여우〕 HSK 4303.10-1600호

| 가격(예)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100만원 | 기본16 | – | – | – | – | 10 | 27.60 | 30 |
| 300만원 | | 과표 200만 원 초과액의 20% | – | 30 | 10 | 10 | 42.79 | – |
| 500만원 | | | | | | | 51.01 | – |
| 800만원 | | | | | | | 55.63 | – |

※ 과세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부과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9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5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천연모피의류 (토끼) :** HSK 4303.10–1200호

※ 토끼모피는 개별소비세 제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6 | - | - | - | - | 10 | 27.6 | 3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9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5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인조모피의류 :** HSK 4304.20–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모피의류의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될 수 있다. 모든 모피의류가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학명에 따라서 CITES* 협약의 규제대상일 수가 있다.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규제대상의 경우「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 등이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먼저 구입하고자 하는 모피의류에 사용된 모피에 대하여 관련기관(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에 CITES 협약의 규제대상 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 38 서적(Books)



## 물품 개요

소설, 영어 교육과련 도서, 전문서적 등 다양한 종류의 '해외 원서'가 수입되고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사전 · 백과사전은 HSK 4901.91-9000호에 분류되며, 각종 서적은 HSK4901.99-9000호에 분류된다. 각종 서적으로는 전문서, 참고서적, 교과서, 예배용 책 등이 포함된다.

아동용 그림책은 HSK 4903.00-0000호에 분류된다. '아동용 그림책'은 그림이 주체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용의 책을 말한다. 비록 풍부한 삽화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이야기체로 기록된 '아동용 책'은 일반 서적으로 보아 HSK 4901.99-9000호에 분류하고 있다.

잡지는 HSK 4902.90-9010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지도책자는 HSK 4905.91-1000호에 분류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서적류'는 관세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도 면제하고 있다.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무세 | - | - | - | - | 0 | 0 | - |

# 39 오버코트 · 반코트(편물제)



## 물품 개요

오버코트나 반코트는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 의복이다. 편물은 '니트'라고도 하며 직물이 씨실과 날실이 교차하여 이루어진 반면, 편물은 씨실로 짜던지 또는 한 가닥의 실로 천을 짠 것이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편물제 오버코트 · 반코트는 HS 4단위에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이하 HS 6단위 세분류는 재질별로 분류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남성용(Cotton 제) :** HSK 6101.2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여성용(양모, 동물털로 만든 니트) :** HSK 6102.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남성용(합성섬유제) :** HSK 6101.3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여성용(합성섬유제) :** HSK 6101.3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그 밖의 섬유재료로 만든 오버코트 · 반코트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기본관세 13%, 부가세 10%이며 합산 24.3%의 세금이 부과된다. FTA 특혜관세 적용 시 칠레, 아세안, EFTA, 미국, 인도, EU, 페루, 터키의 경우 0%의 관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10%만 부과되나, 싱가포르의 경우 FTA 적용 시 2.4%(2014년)의 관세와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 40 패딩점퍼 · 패딩조끼(직물제)



## 물품 개요

패딩점퍼나 패딩조끼는 오리털, 거위털 또는 합성섬유 패드를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어 봉제한 상의 의류로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 의복이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직물제 패딩점퍼 · 패딩조끼는 HS 4단위에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HS 5단위에서 남성용 패딩 오버코트, 패딩 반코트는 HS 6201.1호에 분류되고 여성용 패딩 오버코트, 패딩 반코트는 HS 6202.1호에 분류되고 있다. 남성용 패딩점퍼, 패딩 조끼는 HS 6201.9호에 분류되고, 여성용 패딩점퍼, 패딩 조끼는 HS 6202.9호에 분류된다. 이하 HS 6단위 세분류는 재질별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편물제 패딩점퍼 · 패딩조끼는 제61류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남성용 패딩점퍼(Cotton 제) :** HSK 6201.92-0000호

**남성용 패딩조끼(Cotton 제) :** HSK 6201.92-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여성용 패딩점퍼(Cotton 제) :** HSK 6202.92-0000호

**여성용 패딩조끼(Cotton 제) :** HSK 6202.92-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남성용 패딩점퍼(합성섬유제) :** HSK 6201.93-1000호

**남성용 패딩조끼(합성섬유제) :** HSK 6201.93-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4.9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3.3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6 | 0 | 0 | 0 |

**여성용 패딩점퍼(합성섬유제) :** HSK 6202.93-1000호

**여성용 패딩조끼(합성섬유제) :** HSK 6202.93-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남성용 직물제 오버코트 · 반코트는 양모제의 경우 HSK 6201.11-0000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면제의 경우 HSK 6201.12-0000호에 분류되며, 합성섬유제의 경우 HSK 6201.93-1000호에 분류된다.

○ 여성용 직물제 오버코트 · 반코트는 양모제의 경우 HSK 6202.11-0000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면제의 경우 HSK 6202.12-0000호에 분류되며, 합성섬유제의 경우 HSK 6202.93-1000호에 분류된다.

○ 패딩 오버코트 · 반코트는 오버코트 · 반코트와 같은 품목번호로 분류된다. 이들 오버코트 · 반코트는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패딩 점퍼



패딩 조끼



패딩 오버코트

# 41 정장(직물제)



## 물품 개요

정장은 상 · 하의 세트로 구성된 의복으로서 예의를 갖추어 입는 의류를 말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정장'을 '슈트'라고 말하며, 겉감이 동일한 직물로 제조된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세트 의류를 말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남성용 슈트(양모제) :** HSK 6203.11-0000호 **여성용 슈트(양모제) :** HSK 6204.1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13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13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0 | 0 | 0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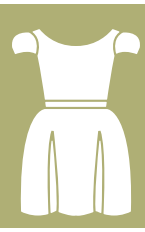
**여성용 슈트(합성섬유제) :** HSK 6204.13-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42 드레스(여성용)



## 물품 개요

드레스는 상 · 하의의 구분이 없는 원피스로 된 여성용 겉옷을 말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드레스'는 편물(니트)로 만든 경우 HS 6104.4호에 분류되고, 직물로 만든 경우 HS 6204.4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드레스(니트, 양모제) :** HSK 6104.4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드레스(직물, Cotton제) :** HSK 6204.42–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4.9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3.3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6 | 0 | 0 | 0 |

## 참고사항

○ 합성섬유제, 재생섬유(레이온, 아세테이트)제, 실크제로 만든 드레스의 관세율, 부가세 및 FTA 특혜관세 체계는 '드레스(니트, 양모제)'와 동일하다.

# 43 치마(Skirts)



## 물품 개요

'치마'는 주로 여성들이 하반신에 둘러 감싸 입는 옷을 말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치마는 '니트제'의 경우 HS 6104.5호에 분류되며, '직물제'의 경우 HS 6204.5호에 분류된다. 5단위 이하는 재질(예: 양모, 면, 합성섬유 등)로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치마(니트, Wool제) :** HSK 6104.5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0 | 0 | 0 | 0 |

**치마(직물, Wool제) :** HSK 6204.5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13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13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치마바지'도 '치마(스커트)'와 같은 번호로 분류되고 있다.

# 44 긴바지(Trousers)



## 물품 개요

'긴바지'는 양쪽으로 다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랑이가 나누어져 있는 형태의 하의를 말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바지는 '니트제'의 경우 HS 6104.6호에 분류되며, '직물제'의 경우 HS 6204.6호에 분류된다. 5단위 이하는 재질(예: 양모, 면, 합성섬유 등)로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바지(니트, 합성섬유제) :** HSK 6104.63–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0 | 0 | 0 | 0 |

**청바지(직물, Cotton제) :** HSK 6204.62–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짧은바지'와 '반바지'도 '바지'와 같은 번호로 분류되고 있다.

# 45 셔츠



## 물품 개요

셔츠는 상의 의복으로서 겉옷 안에 입으며, 단을 바지나 스커트 속에 집어넣어서 입는 옷을 말한다. 종류로는 드레스 셔츠, 스포츠용 셔츠와 레저용 셔츠가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셔츠'는 상의로서 소매가 달린 것(긴 것과 짧은 것)으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오픈되거나 부분적으로 오픈되는 의류를 말한다. 포켓이 허리 아래에 있거나 의류 밑부분에 밴드가 있는 것은 셔츠로 분류하지 않는다. 셔츠는 편물(니트)로 만든 경우로서 남성용은 HS 6105호에 분류되고, 여성용은 HS 6106호에 분류되며, 직물로 만든 경우 남성용은 HS 6205호에 분류되고, 여성용은 HS 6206호에 분류된다. 셔츠의 세분류는 HS 4단위 이하 10단위 까지 섬유 재질별로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남성용 셔츠(니트, Cotton제) :** HSK 6105.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13 | 0 | 0 | 4.9 | 0 | 0 | 0 |
| 2015년 | 0 | 1.2 | 13 | 0 | 0 | 3.3 | 0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1.6 | 0 | 0 | 0 |

### 여성용 셔츠(니트, 합성섬유제) : HSK 6106.2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남성용 셔츠(직물, Cotton제) : HSK 6105.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13 | 0 | 0 | 4.9 | 0 | 0 | 0 |
| 2015년 | 0 | 1.2 | 13 | 0 | 0 | 3.3 | 0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1.6 | 0 | 0 | 0 |

### 여성용 셔츠(직물, 합성섬유제) : HSK 6106.2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4.9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3.3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6 | 0 | 0 | 0 |

## 참고사항


드레스 셔츠


스포츠 셔츠


레저용 셔츠

# 46 블라우스



## 물품 개요

블라우스는 프랑스어의 블루즈(blouse)에서 유래된 것으로 어깨에서 허리까지로 된 상반신에 착용하는 가벼운 소재로 만든 헐렁한 장식이 있는 여성 옷을 말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블라우스'는 편물인 경우 HS 6106호, 직물인 경우 HS 6206호에 분류된다. HS 6106호와 HS 6206호에는 허리 아래 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나 의류 밑 부분에 조이는 밴드가 있는 의류의 경우 분류되지 않는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블라우스(니트, Cotton제) :** HSK 6106.1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2.6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블라우스(직물, 합성섬유제) : HSK 6106.4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2.6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47 티-셔츠



## 물품 개요

티셔츠는 상의 의복으로서 단추가 없는 "T"자 모양의 상의 속옷을 말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티셔츠'는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를 말하는 것으로 칼라가 없이 네크라인(원형, 정방형, 보트모양, V자형)을 가지고 있으며,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며,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 및 오프닝이 없는 의류를 말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티셔츠(니트, Cotton제) :** HSK 6109.1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4.9 | 0 | 2.6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3.3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6 | 0 | 0 | 0 |

### 티셔츠(니트)

〔견으로 만든 것〕 HSK 6109.90–1010호 〔양모로 만든 것〕 HSK 6109.90–2010호

〔인조섬유로 만든 것〕 HSK 6109.90–3010호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HSK 6109.90–901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관세율표상 티셔츠에 해당되지 않는 의류는 경우에 따라 셔츠, 풀오버 등으로 분류된다.





# 48 카디건 · 터틀넥



## 물품 개요

'카디건'은 칼라가 없이 앞이 트인 스웨터를 말하며, '터틀넥'은 거북 의 목처럼 생긴 네크라인을 가지는 풀오버(뒤집어 씌워 입는 옷)를 말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니트제 '카디건'과 '터틀넥'은 HS 6112호에 같이 분류되며, 4단위 이하는 재질(예: 양모, 면, 합성섬유 등)로 분류된다.



카디건



터틀넥풀오버

### 주요품목 및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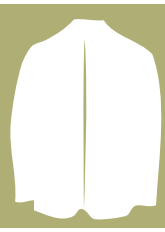
**카디건 • 터틀넥풀오버(니트, Cotton제) :** HSK 6110.2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13 | 0 | 0 | 0 | 0 | 2.6 | 0 |
| 2015년 | 0 | 1.2 | 13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0 | 0 | 0 | 0 |

# 49 지퍼 점퍼



## 물품 개요

'점퍼'는 운동량이 풍부하고 폼이 넉넉한 활동적인 웃옷을 말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점퍼'는 재킷 종류의 하나로서 앞여밈을 단추로 여밀 때에는 니트제의 경우 HS 6103.3호(남자) 또는 HS 6104.3호(여자)로 분류하고 직물제의 경우 6203.3호(남자) 또는 HS 6204.3호(여자)로 분류한다. 그러나, 앞여밈을 지퍼로 할 경우에는 '기타 의류'로 분류되고 있다. '니트제'의 경우 HS 6114호에 분류되며, '직물제'의 경우 HS 6211.3호(남자)와 HS 6211.4호(여자)에 분류된다. 5단위 또는 6단위 이하는 재질(예: 양모, 면, 합성섬유 등)로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지퍼 점퍼(직물제, 합성섬유, 남자) :** HSK 6211.33-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0 | 0 | 0 | 0 |

# 50 고어텍스 등산점퍼



## 물품 개요

'고어텍스'란 무수한 작은 구멍이 있는 아주 얇은 테플론계 수지 막을 천에 붙임으로서 방수 기능이 있으면서도 땀을 배출할 수 있는 기능성 적층직물을 말한다. 미국 뒤퐁사의 W.L.고어가 발명하여 '고어텍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수지(플라스틱)으로 적층한 직물을 재료로 사용한 점퍼(자켓)은 HS 6210호에 분류하고 있다. 바람막이 등산 점퍼의 경우 HS 6201호(남성), HS 6202호(여성)에 분류되나, 수지 막이 적층된 직물을 사용한 바람막이 등산 점퍼는 HS 6210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고어텍스 등산점퍼(직물제, 남자) :** HSK 6210.4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51 장갑류(Gloves, mittens & mitts)



## 물품 개요

장갑은 일반적으로 손의 보호 · 보온 · 장식 등의 목적으로 손에 끼는 주머니 모양으로 된 것을 말하며, 섬유재료, 가죽,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 진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장갑류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 없이 사용 재료에 따라 분류되며, 섬유재료로 제조된 경우는 편물의 경우 제61류, 직물의 경우 제62류로 분류되고 있고, 가죽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경우는 플라스틱제품(제39류)나 가죽제품(제42류)으로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장갑(니트)(플라스틱/고무 도포된 것) :** HSK 6116.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장갑(직물 또는 부직포)(플라스틱/고무 도포된 것) : HSK 6216.0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7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장갑(플라스틱, 합성피혁) : HSK 3926.2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장갑(가죽) : HSK 4203.21-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4.9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3.3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6 | 0 | 0 | 0 |

## 참고사항

○ 골프장갑은 관세율표상 골프용품이 분류되는 HS 9506.3호에 분류하지 않고, 소재에 따라 분류되는 장갑의 품목분류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된다.

# 52 넥타이류(Ties)



## 물품 개요

넥타이란 목 또는 칼라 둘레를 매는 밴드형의 섬유 제품을 총칭하는 말이다. 현재는 띠 모양의 넥타이가 남성용 타이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식요소가 적은 남성복에서 넥타이는 중요한 액세서리 역할을 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넥타이류는 의류부속품으로서, 대부분 섬유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세율표상 편물제의 것은 HS 6117.80호에 분류되며, 직물제의 것은 HS 6215호에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넥타이(편물) :** HSK 6117.8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 | 0 | 0 | 0 |

**넥타이(직물) 〔실크제〕 : HSK 6215.10-0000호**

**〔인조섬유제(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레이온, 아세테이트 등)〕 : HSK 6215.2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7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넥타이(직물) 〔기타 섬유재료〕 : HSK 6215.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넥타이 종류

| 품 명 | 사 진 | 품 명 | 사 진 |
|---|---|---|---|
| 포인핸드<br>(Four-in-hand) |  | 보우타이<br>(Bow tie) |  |
| 스톡타이<br>(Stock tie) |  | 애스컷 타이<br>(Ascot tie) |  |

# 53 손수건과 스카프



## 물품 개요

형태적인 측면에서 손수건과 스카프는 천을 직사각형으로 자르고 가장자리를 올이 풀어지지 않게 가공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손수건은 오염된 부분을 닦아내는 데 사용되는 반면, 스카프는 방한용과 장식용으로 목에 감거나 머리에 쓰는 물건으로 두 제품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이들 제품은 섬유재료로 만들어지며, 관세율표상 편물(니트)의 경우 제61류에 분류되고, 직물의 경우 제62류에 분류되고 있다.

관세율표에서는 직물제 손수건과 스카프를 크기로써 구분하고 있는데, 각 변의 길이가 60㎝이하인 것은 '손수건 (HS 6213호)'으로 분류되며, 어느 한 변이라도 길이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스카프(HS 6214호)'로 분류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손수건(Cotton제 직물의 것) :** HSK 6213.2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7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숄 • 스카프 • 머플러(직물) 〔양모(Wool)제〕 : HSK 6214.2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7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숄 • 스카프 • 머플러(직물)**

**〔실크제〕 :** HSK 6214.10-0000호

**〔인조섬유제(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 HSK 6214.30-0000호

**〔재생섬유제(레이온, 아세테이트〕 :** HSK 6214.40-0000호 **〔기타 섬유재료〕 :** HSK 6214.9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0 | 0 | 3 | 0 | 0 | 0 |
| 2015년 | 0 | 0.7 | 0 | 0 | 0 | 2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 | 0 | 0 | 0 |

## 참고사항

손수건과 스카프는 섬유재료에 따라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 '면(Cotton)제 손수건'에는 면 100% 뿐만 아니라 면을 주성분으로 혼방한 손수건도 분류된다. 따라서 면 80%, 아크릴 20%로 혼방된 직물로 만들어진 손수건도 면(Cotton)제 손수건으로 분류된다.

# 54 캠핑용품(Camping goods)

## 물품 개요

주요 캠핑용품으로는 텐트(Tent), 침낭(Sleeping bag), 버너(Burner), 랜턴(Lantern)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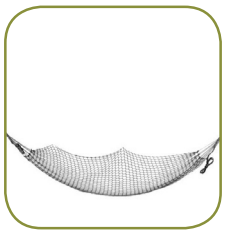
관세율표상 캠핑용품은 섬유재료로 만든 텐트, 캔버스제 양동이 · 수통 · 대야, 압축 공기용 매트리스 · 베개 · 쿠션, 해먹의 경우 HS 6306호에 분류하고 있으나, 배낭은 HS 4202호의 '가방류'에 분류되고, 패드가 들어있는 침낭 · 매트리스 · 베개 · 쿠션은 HS 9404호의 '침구류'에 분류되며, 플라스틱제 물품은 주로 HS 3923호부터 HS 3926호까지 분류된다. 해먹의 경우 그물코가 있는 망으로 만든 것은 HS 5608호(기본관세 10%, FTA적용 시 관세 0%, 부가세 10%)에 분류하고 있다.


캔버스양동이


캔버스대야


압축공기매트


해먹


망 해먹

## 주요품목 및 관세율

### 텐트

**(합성섬유로 만든 것) :** HSK 6306.12-0000호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 HSK 6306.19-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면으로 만든 것) :** HSK 6306.40-1000호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 HSK 6306.4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 섬유제 캠핑용품

**(면으로 만든 것) :** HSK 6306.90-1000호 **(합성섬유로 만든 것) :** HSK 6306.90-2000호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 HSK 6306.90-9000호

(예) 캔버스제 양동이 • 수통 • 대야, 압축 공기용 베개 • 쿠션, 해먹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침낭(Sleeping bag) : HSK 9404.3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캠핑스토브(일명 버너) : HSK 7321.1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캠핑 그릴 : HSK 7321.19–0000호

(예) 본체, 숯받이, 석쇠로 구성되어 있는 철강제 물품으로 숯불을 별도로 넣은 후 육류 등을 익혀 먹을 수 있는 캠핑용 그릴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배터리 사용 랜턴(Lantern)

〔LED 랜턴〕 HSK 8513.10–9010호 〔그 밖의 랜턴〕 HSK 8513.10–909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55 신발(Footwear)류



## 물품 개요

신발은 기본 기능은 발의 보호, 보행 또는 일의 증진을 위한 것이나, 최근에는 의복과 조화 등 패션 측면도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어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신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일명 직구)로 수입되는 주요 신발 종류로는 유명브랜드의 부츠, 구두, 운동화가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에서 신발류는 갑피와 바깥바닥의 재료에 따라 HS 4단위 호가 구분되고 있으며, 이하 10단위까지 코드는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갑피의 주요 재료는 가죽, 플라스틱, 섬유직물, 고무가 사용되고 있으며, 바깥바닥의 주요 재료는 플라스틱과 고무이다.

'구두'는 관세율표에서는 '드레스화'로 표현되고 있으며 의미는 '정장용 구두'를 말한다. '부츠'의 경우 관세율표에는 '발목을 덮는 것'으로 표현되며 정장용은 '드레스화'로 표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운동화'는 관세율표상 '스포츠화'나 기능성이 있어야 분류되는 운동화인 '테니스화, 농구화, 체조화, 훈련화'와 다른 품목코드에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구두** : HSK 6403.99-1000호

(갑피: 가죽, 바깥바닥: 고무/플라스틱)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부츠

**(정장용) :** HSK 6403.91–1000호 **(캐주얼용) :** HSK 6403.91–9000호

(갑피: 가죽, 바깥바닥: 고무/플라스틱)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일반 운동화, 캐주얼화 :** HSK 6402.99–9000호

(갑피: 플라스틱(합성피혁), 바깥바닥: 고무/플라스틱)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일반 운동화, 캐주얼화 :** HSK 6403.99–9000호

(갑피: 가죽, 바깥바닥: 고무/플라스틱)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일반 운동화, 캐주얼화 :** HSK 6404.19–9000호

(갑피: 직물 등 섬유재료, 바깥바닥: 고무/플라스틱)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4.9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3.3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6 | 0 | 0 | 0 |

## 참고사항

○ 관세율표상의 '스포츠화'는 ①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 · 스프리그 · 스톱 · 클립 · 바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한 신발, 또는 ② 스케이팅 부츠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 레슬링부츠 · 복싱부츠 · 사이클화를 말하며, 스포츠에 사용되는 모든 신발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스포츠용 신발류의 품목분류와 세율은 다음과 같다.

– 품목분류

| 구 분 | | 스키부츠, 스노보드부츠,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기 타 |
|---|---|---|---|
| 갑 피 | 바깥바닥 | | |
| 플라스틱 | 고무/플라스틱 | HSK 6402.12–0000 | HSK 6402.19–0000 |
| 가 죽 | 고무/플라스틱 | HSK 6403.12–0000 | HSK 6402.19–0000 |
| 섬유재료 | 고무/플라스틱 | HSK 6404.12–0000 | HSK 6402.19–0000 |

– 세율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56 모자(Head gear)



## 물품 개요

모자는 추위나 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거나 장식적으로 또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총칭(출처: 두산백과)한다. 모자를 형태로 구분하면 크게 캡(Cap), 해트(Hat), 보닛(Bonnet)과 후드(Hood)로 나뉜다.


캡(Cap)


해트(Hat)


보닛(Bonnet)


후드(Hood)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일반적으로 구성 재료나 용도(일상 활용, 무대용, 가면용, 보호용 등)에 관계없이 각종의 모자류를 관세율표 제65류에 분류하고 있다. 재료에 따라 HS 4단위 호를 나누고 있어, '각종 재료제의 스트립을 엮은 것 또는 결합한 것'은 HS 6504호에, '니트, 펠트 , 직물류의 모자'는 HS 6505호에 '플라스틱 등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모자'는 HS 6506호에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 모자(니트, 섬유재료)

**(합성섬유) :** HSK 6505.00–9011호 **(니트, 그 밖의 섬유재료) :** HSK 6505.00–9019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모자(직물, 섬유재료) (운동모자) : HSK 6505.00–9021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모자(펠트, 섬유재료) : HSK 6505.00–9090호 (예) 펠트제 중절모, 클로슈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안전모자 :** HSK 6506.10-0000호 (예) 오토바이 헬멧, 자전거용 헬멧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모자류(제65류)에 분류되지 않는 모자류

- 동물용 모자: HSK 4201.00-9090호(관세8%, 부과세 10%, 합계 18.8%)
- 인형용 모자 : HSK 9503.00-2910호(관세8%, 부과세 10%, 합계 18.8%)

# 57 양산 · 우산



## 물품 개요

산(傘)류는 접을 수 있도록 뼈대가 있으며, 천에 살을 덧대어 접었다 펼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양산은 볕을 가리기 위하여 쓰는 산(傘)류로서 장식품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물품이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양산'과 '우산'은 모두 HS 6601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양산 :** HSK 6601.99-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접이식 우산 :** HSK 6601.9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58 도자기 제품(Ceramic ware)



## 물품 개요

도자기 제품은 일반적으로 무기질재료(예: 점토 등)와 기타 재료를 상온에서 성형하여 구어 만는 제품을 말한다. 구운 온도에 따라 토기, 도기, 자기 등으로 불리어 진다. 전자상거래에 의해 주로 거래되는 제품으로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이나 주방용품이다. 도기는 점토를 완전 유리질화한 온도 보다 낮은 1,100℃ 정도에서 구운 것으로 자기보다 흡수성이 높으며, 자기는 1,300℃ 이상에서 구워지는 것으로 유리질화되어 투광성이 있으며, 때리면 맑은 소리가 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식탁용품 · 주방용품 및 그 밖의 가정용품으로서 자기제의 것은 HS 6911호에 분류되고 그 밖의 도자제품(예: 석기, 토기, 도기)의 경우에는 HS 6912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자기제 커피세트 • 티세트 :** HSK 6911.1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 | 0 | 0 | 0 | 3 | 2.6 | 0 | 0 |
| 2015년 | 0 | - | 0 | 0 | 0 | 2 | 1.3 | 0 | 0 |
| 2016년 | 0 | - | 0 | 0 | 0 | 1 | 0 | 0 | 0 |

### 자기제 공기 • 대접 • 접시 : HSK 6911.10-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 | 0 | 0 | 0 | 3 | 0 | 0 | 0 |
| 2015년 | 0 | - | 0 | 0 | 0 | 2 | 0 | 0 | 0 |
| 2016년 | 0 | - | 0 | 0 | 0 | 1 | 0 | 0 | 0 |

### 자기제 머그컵, 주전자 : HSK 6911.1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 | 0 | 0 | 0 | 3 | 0 | 0 | 0 |
| 2015년 | 0 | - | 0 | 0 | 0 | 2 | 0 | 0 | 0 |
| 2016년 | 0 | - | 0 | 0 | 0 | 1 | 0 | 0 | 0 |

## 참고사항

○ EU*에서 도자기 제품을 FTA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할 경우에는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제조된 원산지 표시가 있는 송장(Invoice)이 첨부되어 있으면 통과할 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구매사이트의 Customer E-mail나 라이브 채팅을 통해 송장에 원산지 표기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문구 예) The exporter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are of "Country name origin"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키프로스, 몰타,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 59 유리제품(Glass ware)



## 물품 개요

주방, 식탁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유리제품은 주형에서 압축 또는 취입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러한 유리제품으로는 유리잔, 유리컵, 유리접시, 소금 그릇, 꽃병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식탁용 · 주방용 · 화장실용 · 실내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제품은 HS 7013호에 분류되고 있다. HS 7013호에는 '납크리스탈로 만든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납크리스탈로 만든 것'이라 함은 산화납(PbO)의 함량이 24%이상 함유하고 있는 유리로서 투명도가 높으며 경쾌한 충격음을 가지고 있어 고급 유리제품에 사용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와인잔(납크리스탈제로 만든 것) :** HSK 7013.22-0000호
**유리컵(납크리스탈제로 만든 것) :** HSK 7013.33-0000호
**유리접시(납크리스탈제로 만든 것) :** HSK 7013.42-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와인잔(일반유리로 만든 것) :** HSK 7013.28–0000호
**유리컵(일반유리로 만든 것) :** HSK 7013.37–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2.6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1.3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유리접시(일반유리로 만든 것) :** HSK 7013.49–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3 | 2.6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2 | 1.3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 | 0 | 0 | 0 |

**유리꽃병 :** HSK 7013.99–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거울(틀이 붙은 것) :** HSK 7009.92–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60 액세서리류

## 물품 개요

액세서리 본래의 의미는 '부속물', '보조물'이란 것으로서 여기에서 착장을 완성시키기 위한 부속품을 가리키게끔 되었다. 그 범위는 백, 구두 등에도 이르지만 일반적으로 실용보다는 장식을 목적으로 한 목걸이, 귀고리, 브로치 등의 '장신구'를 말할 때가 많으며, 영어로는 이것을 오너먼트라 부르고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액세서리는 '신변장식용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변장식용품이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 반지, 팔찌,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시계용 체인 등과 주머니, 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 예를 들어 시가케이스, 화장갑, 묵주 등을 말한다. 신변장식용품으로서 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은 HS 7113호에 분류되며, 그 밖의 것은 '모조신변장식용품'으로 HS 7117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신변장식용품**

**〔귀금속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HSK 7113.11-0000호 **백금으로 만든 것:** HSK 7113.19-1000호

**금으로 만든 것:** HSK 7113.19-2000호 **기타:** HSK 7113.19-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0 | 0 | 0 | 2.6 | 0 | 0 |
| 2015년 | 0 | 0.7 | 0 | 0 | 0 | 0 | 1.3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백금으로 만든 것은 '14년부터 0%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으로 만든 것〕**

**백금을 입힌 것:** HSK 7113.20–1000호 **금을 입힌 것:** HSK 7113.20–2000호

**은을 입힌 것:** HSK 7113.20–3000호 **기타:** HSK 7113.20–9000호

**〔모조신변장식용품〕**

**비(卑)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 도금 여부 불문)으로서,**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HSK 7117.11–0000호

**목걸이:** HSK 7117.19–1000호 **팔찌:** HSK 7117.19–2000호 **귀걸이:** HSK 7117.19–3000호

**브로치:** HSK 7117.19–4000호 **반지:** HSK 7117.19–5000호

**신변장식용 체인:** HSK 7117.19–6000호 **기타:** HSK 7117.19–9000호

**기타:** HSK 7117.9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은을 입힌 것과 기타의 것은 '14년 3%, '15년 2%, '16년 1%

## 참고사항

○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물품의 가격이 원화로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한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세금 합산 예〉 A: 37만 400원 + 185만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예시금액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300만원 | 기본 8 | 20 | – | 30 | – | 10 | 30.62 | A |
| 500만원 | | | | | | | 38.25 | |
| 800만원 | | | | | | | 42.53 | |

* 개별소비세 =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 **20%**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30%**

# 61 플라스틱제 식탁 · 주방용품

## 물품 개요

플라스틱제 식탁용품으로는 수프그릇, 샐러드그릇, 접시, 쟁반, 티포트, 맥주잔, 컵 포크, 스푼, 양념병 등이 있으며, 주방용품으로는 빵상자, 주전자, 깔때기, 국자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플라스틱제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은 HSK 3924.10-0000호에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플라스틱제 식탁용품 • 주방용품 :** HSK 3924.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유아용 스푼



뒤집게


유아용 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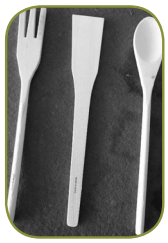

도마

# 62 나무제 식탁 · 주방용품

## 물품 개요

나무제 식탁 · 주방용품으로는 수저, 젓가락, 포크, 쟁반 및 접시, 항아리, 컵, 냅킨꽂이, 롤링핀, 공기, 식기선반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목재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은 HS 4419.00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통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화이버보드 적층목재(합판) 등의 재료로 만든다. 목재로 만든 가구의 경우 HS 9401호부터 HS 9403호까지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나무제 식탁용품 • 주방용품** 〔대접 및 공기〕 HSK 4419.00–1000호

〔대나무제 젓가락〕 HSK 4419.00–2010호 〔기타 식탁 • 주방용품〕 HSK 4419.0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63 금속제 주방 · 식탁용품 I



## 물품 개요

주방용품은 주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용되는 단순한 물품을 말한다. 주요 주방용품으로는 소스팬, 냄비, 프라이팬, 주전자, 압력솥, 거품기, 뒤집개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금속제 주방용품은 철강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관세율표상 철강제의 주방용품은 주로 HS 7323호의 '철강제의 주방용품'에 분류되며, 종류별이 아닌 재질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알루미늄제의 냄비나 프라이팬의 경우 HS 7615호의 '알루미늄제 주방용품'으로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스테인리스강제 주방용품 :** HSK 7323.93–0000호

(예: 소스팬, 냄비, 프라이팬, 주전자, 압력솥, 거품기, 뒤집개)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그 밖의 철강제 범랑 주방용품 : HSK 7323.94-0000호

(예:냄비, 주전자)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알루미늄제 주방용품 : HSK 7615.10-9020호

(예:냄비, 프라이팬)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주방용품과 더불어 조리에 사용되는 것으로는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오븐 등' '주방기기'도 있다.

# 64 금속제 주방 · 식탁용품 II



## 물품 개요

금속제 주방 · 식탁용품으로는 쟁반, 접시, 컵, 잔, 스푼, 포크, 국자, 칼, 젓가락, 가위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금속제 주방용품은 철강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관세율표상 철강제의 주방용품은 주로 HS 7323호의 '철강제의 주방용품'에 분류되며, 종류별이 아닌 재질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칼(HS 8211호), 스푼 · 포크 · 국자(HS 5215호)와 같이 다른 품목코드로 분류되는 물품도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주방용 칼** 〔세트〕 HSK 8211.10–0000호 〔단품〕 HSK 8211.9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스푼 • 포크 • 국자

〔세트〕 (귀금속 도금) HSK 8215.10–0000호, (기타) HSK 8215.20–0000호

〔스푼〕 (귀금속 도금) HSK 8215.91–1000호, (기타) HSK 8215.99–1000호

〔포크〕 (귀금속 도금) HSK 8215.91–2000호, (기타) HSK 8215.99–2000호

〔국자〕 (귀금속 도금) HSK 8215.91–3000호, (기타) HSK 8215.99–3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가정용 가위 : HSK 8213.0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쟁반, 접시(철강제 범랑) : HSK 7323.94–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65 체중계, 가정용 저울



## 물품 개요

체중계는 건강상태에 이상은 없는지, 유아의 성장이 순조로운지 등을 알기 위해 사용되며, 스프링을 이용한 자동식과 분동(分銅)을 사용하는 수동식이 있다. 자동식은 간편하고 편리하지만 정확도는 지레의 원리를 이용한 수동식이 우수하다. 자동식은 헬스미터라고 부르는 발판식인데, 발밑에 눈금판이 있고 숫자로 무게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 있다. 가정용 저울은 식재료의 무게를 재는 등 음식의 조리, 식이조절 등에 사용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체중계는 제8423호에 분류되며 이 호에는 가정형 저울이 포함된다. 다만, 제8423호에는 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되며, 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것은 정밀기기의 일종으로서 제9016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체중계 및 가정형 저울** (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것) HSK 8423.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66 프린터



## 물품 개요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처리된 정보를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인쇄하는 출력장치로 인쇄방식에 따라 충격식과 비충격식으로 나뉜다. 충격식이란 활자나 인쇄핀으로 잉크가 묻은 리본을 충격하여 종이에 인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상 도트프린터라고 불린다. 비충격식 프린터는 충격식에 비하여 소음이 적고 인쇄속도가 빠르며 인쇄품질이 높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널리 쓰이는 비충격식 프린터로는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프린터는 HS 8443호에 분류된다. HS 8443호에서는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팩시밀리 전송기능 중 하나 이상을 함께 수행하는 이른바 '디지털 복합기' 해당 여부를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레이저 프린터, 도트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로 구분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프린터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 HSK 8443.32-1010호 **잉크젯 프린터 :** HSK 8443.32-103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0 | – | – | – | – | 10 | 10 | - |

# 67 전동 공구



## 물품 개요

전동공구는 전동기를 내장하고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금속이나 목재 등을 가공하는 공구로서, 주로 손에 쥐고 취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동공구는 전기드릴이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규모 전동공구는 '수지식 공구'로서 제8467호에 분류된다. 수지식 공구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하며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를 포함하며, 일시적으로 지지대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용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전동 공구 (수지식 공구로서 전동기를 갖춘 것)**

〔각종 드릴〕 HSK 8467.21-0000호 〔톱〕 HSK 8467.22-0000호

〔기타〕 HSK 8467.29-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68 노트북 컴퓨터 · 태블릿 PC



## 물품 개요

노트북 컴퓨터는 휴대가 간편하여 개인이 소지하고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크기의 컴퓨터를 말한다. 정식명칭은 노트형 퍼스컴(notebook-sized personal computer)이며, 휴대가 간편하여 무릎 위에 올려두고 사용한다는 의미로 랩톱 컴퓨터(lap top computer)라고 하기도 한다. 노트북 컴퓨터는 같은 성능의 데스크톱 컴퓨터보다 더 정밀하고 소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편으로 회사별로 제조 방법이 달라 쉽게 조립하여 구성하기가 어려우며 탈착이 가능한 주변장비의 호환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컴퓨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노트북 컴퓨터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HS 8471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노트북 컴퓨터 • 태블릿 피시**(PC)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HSK 8471.3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0 | – | – | – | – | 10 | 10 | - |

## 참고사항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는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는 1대에 한하여 전파법에 따른 인증 등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으나, 1대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 69 컴퓨터 주변기기

## 물품 개요

컴퓨터는 크게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로 구분된다. 컴퓨터 주변기기로 불리는 물품은 컴퓨터시스템에서 입출력장치로 사용되는 기기를 주로 일컫는데 입력장치에는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마이크로폰, 카메라 등이, 출력장치로는 모니터, 프로젝터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컴퓨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로서 제8471호에 분류되며, HS 8471호에는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와 같은 컴퓨터의 단위기기를 포함한다. 하지만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데이터송수신기기, 마이크로폰, 카메라,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HS 8471호에 분류되지 않고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컴퓨터의 단위기기로 보는 것**

〔키보드〕 HSK 8471.60-1020호 〔마우스〕 HSK 8471.60-1030호

〔스캐너〕 HSK 8471. 60-104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0 | – | – | – | – | 10 | 10 | - |

컴퓨터의 단위기기로 보지 않는 것(해당 물품 참고)

- 프린터 · 복사기 · 팩시밀리: HS 8443호
- 데이터송수신기기: HS 8517호
- 마이크로폰: HS 8518호
- 카메라: HS 8525호
- 모니터 · 프로젝터: HS 8528호

# 70 배터리 충전기

## 물품 개요

휴대용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등 다양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배터리 충전기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충전기는 축전기에 충전을 하는 기기로 정류기에 의한 직류 전압을 사용하여 방전 후의 전지에 전압을 가하여 충전을 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배터리 충전기는 HS 8504호에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용 충전기와 전자통신용 기기의 충전기, 그 밖의 충전기를 구분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 배터리 충전기

〔컴퓨터 및 그 단위기기의 것,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HSK 8504.40-301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0 | – | – | – | – | 10 | 10 | - |

〔기타〕 HSK 8504.40-309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71 가정용 진공청소기



## 물품 개요

진공청소기(vacuum cleaner)는 공기의 압력차에 의해 먼지 등이 빨려 들어오도록 만들어진 청소기구로 흡입구 · 모터 · 회전날개 · 필터 · 먼지받이 케이스 · 배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공청소기는 먼지를 빨아들여 먼지봉투에 모으는 방식으로 본체, 호스, 파이프, 솔 등으로 구성되어 빨아들이는 힘만으로 청소하는 형태이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진공청소기는 가정형의 것이든 산업용의 것이든 제8508호에 분류되나, FTA협정 관세는 가정용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동기를 갖추었는지 여부, 로봇형인지 여부 등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주요품목 및 관세율

### 주요품목 및 관세율

**가정용 진공청소기**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로보트형〕 HSK 8508.11-1000호 〔기타〕 HSK 8508.11-9000호

**기타** 〔로보트형〕 HSK 8508.19-2000호 〔기타〕 HSK 8508.19-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72 식품용 그라인더 · 믹서, 과즙 · 채소즙 추출기



## 물품 개요

식품용 그라인더(grinder)는 식품을 입자, 부스러기, 파우더 등으로 잘게 만들 수 있는 기기로 믹서, 녹즙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가정용 식품처리기기(food processing machine) 중 하나이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식품그라인더는 '가정용 기기'로서 관세율표상 HS 8509호에 분류된다.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로 수치 · 설계 · 용량 또는 용적 등이 산업용 기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식품용 그라인더 및 믹서는 육 · 어류, 채소, 과실의 분쇄기, 커피, 쌀 · 보리 등의 다목적 분쇄기, 밀크쉐이커, 아이스크림 믹서, 가루 반죽기 등이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식품용 그라인더 • 믹서, 과즙 • 채소즙 추출기 :** HSK 8509.4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73 면도용품



## 물품 개요

면도용 제품류로는 면도기, 면도용 크림 또는 면도용 검품, 면도후 용 로션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면도에 사용되는 화장품류'는 HS 3307.10호에 분류하고 있다. '일반 면도기'는 HS 8212.10호에 분류하고, '면도날'은 HS 8212.20호에 분류되며, '전기면도기'의 경우 HS 8510.10호에 분류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전기면도기 :** HSK 8510.1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에프터 세이빙 로션 :** HSK 3307.1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세이빙 크림 • 폼 :** HSK 3307.1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6.5 | – | – | – | – | 10 | 17.15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전기면도기’에 사용되는 ‘날(cutter blade)’의 경우 ‘면도날(HS 8212.20호)’로 분류되지 않고 ‘전기면도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기면도기’의 부분품은 HSK 8510.90-1000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관세 8%, 부가세 10%로 총과세 18.8%를 부과하며,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FTA를 적용할 경우 관세 8% 대신 FTA 특혜관세 0%를 적용받는다.

# 74 전기 커피메이커(가정용)



## 물품 개요

가정에 사용되는 전기 커피메이커는 일반적으로 전기 열에 의해 뜨거워진 물이 분쇄한 커피콩을 담은 여과지를 빠져나가면서, 아래에 있는 커피포트로 추출된 액이 떨어져 커피를 만드는 기계를 말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가정용 커피메이커는 HS 8516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전기커피메이커 (가정용) :** HSK 8516.7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가정용이 아닌, 회사 · 음식점에 사용되는 전기커피메이커는 HSK 8419.81- 0000호에 분류된다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75 전기다리미



## 물품 개요

전기다리미는 전기를 이용해 열과 압력으로 의류의 모양을 바로잡는 등의 세탁다림질용 기구를 말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전기다리미는 HS 8516호에 분류되며, 전선이 없는 다리미를 포함한 각종 다리미가 분류된다. 전선이 없는 다리미는 전열체를 갖춘 '다리미'와 주배선에 접속될 수 있는 '대'로 구성되어 있어 다리미가 대에 놓여 질 때만 전류가 통과된다. 또한, 이 호에는 물 용기를 내장한 전기스팀 다리미도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전기다리미 :** HSK 8516.4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세탁소에서 사용되는 롤러형 다림질기는 HS 8420호에 분류되며, 의류용 프레스 다림질기는 HS 8450호에 분류되고 있다.

# 76 헤어드레싱 전기제품



## 물품 개요

헤어드레싱 전기제품은 머리카락을 손질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서 헤어드라이어, 헤어컬러 및 퍼머넌트 웨이브기가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헤어드라이어, 헤어컬러, 퍼머넌트 웨이브기기는 HS 8516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헤어드라이어 :** HSK 8516.31-0000호
**헤어컬러 등 그 밖의 헤어드레싱기 :** HSK 8516.32-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77 가정용 전열기기 – 토스터 · 오븐 · 그릴



## 물품 개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쓰이는 각종의 전기식 가열기기는 가정에서 쓰임이 유용하며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토스터는 주로 상부가 개방되어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형태이며, 오븐은 밀폐구조로 식재료에 고열을 가하여 조리한다. 한편, 전기그릴은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전기만 연결되면 고기 등 식재료를 구울 수 있으며 이동성이 좋아 가정에서 애용되고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토스터, 오븐, 그릴은 '가정용 전열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516호에 분류된다. 제8516호에는 헤어드라이어 등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와 전기다리미도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토스터, 오븐, 그릴(가정용)** 〔토스터〕 HSK 8516.72–0000호

〔전기오븐〕 HSK 8516.60–1000호 〔전기그릴〕 HSK 8516.9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78 스마트폰



## 물품 개요

휴대폰과 개인휴대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휴대폰 기능에 일정관리, 팩스 송수신 및 인터넷 접속 등의 데이터 통신기능을 통합시킨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완제품으로 출시되어 주어진 기능만 사용하던 기존의 휴대폰과는 달리 수백여 종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스마트폰는 관세율표상 제8517호의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2G에 해당하는 CDMA(동기식), TDMA(비동기식), 3G에 해당하는 W-CDMA(비동기식), 4G에 해당하는 OFDM 및 LTE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3G폰 및 4G폰은 HS코드는 다르지만 관세율은 같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 스마트폰

〔3G폰(W-CDMA)〕 HSK 8517.12-3090호 〔4G폰(LTE)〕 HSK 8517.12-909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79 헤드셋 · 이어폰

## 물품 개요

헤드셋은 마이크로폰이 추가된 헤드폰이다. 헤드폰은 밴드로 머리에 걸고 귀에 고정하는 것이고, 이어폰은 귀에 끼우는 것으로 두 종류 모두 전기 신호를 음향 신호로 변환하는 소형 장치를 말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HS 8518.30호에는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있어 헤드셋과 이어폰은 모두 같은 호로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헤드셋 • 이어폰 :** HSK 8518.3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3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2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 | 0 | 0 | 0 |

# 80 DVD 플레이어 · 프로젝터



## 물품 개요

DVD 플레이어는 DVD 비디오와 오디오 기술 표준을 둘 다 지원하는 DVD 디스크에 수록된 영상과 음원을 재생하는 장치이다. 프로젝터는 컴퓨터, DVD플레이어, 캠코더 등의 자료를 화면에 전자 영상으로 비추는 장치이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DVD 플레이어는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로 보아 HS 8521호에 분류되고, 프로젝터는 HS 8528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DVD플레이어 :** HSK 8521.9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미니–영상프로젝터 :** HSK 8528.69–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3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2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 | 0 | 0 | 0 |

# 81 DVD · CD




## 물품 개요

DVD는 'Digital versatile disc'라고 하며 영상과 음성을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 · 출력할 수 있는 광디스크 기록매체를 말한다. CD는 'Compact Disc'라고 하며 음악, 데이터 등의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광디스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DVD는 CD보다 6~8배 정도의 기록용량을 가지고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영상이나 음원을 담은 DVD · CD와 기록이 되지 않은 DVD · CD는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로서 같은 HS 8523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DVD • CD(기록이 않된 것) :** HSK 8523.4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0 | – | – | – | – | 10 | 10 | - |

**CD(음이 수록된 것) :** HSK 8a523.49-102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영상이 기록된 DVD는 HSK 8523.49-1039호(기본 8%)로 분류되며, FTA 특혜관세 적용 시 아세안 · 칠레 · EFTA · EU · 페루 · 미국 · 터키는 0%이며, '14년도 기준으로 싱가포르 1.5%, 인도 3%이다.

# 82 텔레비전(TV)



## 물품 개요

텔레비전은 방송국이 수집한 영상과 음성을 전파나 전용선을 통해 원거리에서 수신 · 재현하는 전자제품이다. 텔레비전은 재현방식에 따라 브라운관텔레비전, 액정텔레비전, 플라스마텔레비전, 프로젝션텔레비전 등으로 나뉘며, 해상도에 따라 SD텔레비전, HD텔레비전, Full-HD 텔레비전 등으로 나뉜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춘 일반적인 텔레비전은 관세율표상 HS 8528호에 분류되며 천연색과 단색의 것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음극선관방식, 액정디스플레이방식,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 프로젝션 방식,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텔레비전(천연색, 디지털)**

〔액정디스플레이(LCD) 방식〕 HSK 8528.72-2020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방식〕 HSK 8528.72-5020호

| 예시금액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대각선107cm 이하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300w이상, 대각선 107cm초과 | | 5 | – | 30 | | | 25.9 | 27 |

* 개별소비세 = 물품가격 × 5%,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30%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83 가정형 전동식 재봉기



## 물품 개요

재봉기는 재봉틀 · 채본기라고도 하며, 가정용 재봉기는 1851년 미국의 I.M.싱어가 HA형(표준형) 가정용 재본기를 개발한 이래 HL형(직진봉) · ZU형(지그재그봉) · 프리암형(소매통 재봉이 쉬운 것)의 순으로 개발되었다. 손틀 · 발틀로 시작하여 전기재봉기 · 전자재봉기 · 컴퓨터재봉기의 순으로, 소재면에서는 철주물에서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으로 성능과 소재면에서 다양화 · 전문화 및 경량화되고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가정형 재봉기는 관세율표 HS 8452호에 분류된다. HS 8452호에서는 전동식의 것과 수동식의 것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통 재봉 이외에 장식작업(예: 자수효과)도 가능한 재봉기도 포함되나 자수작업[(실을 끌어당기는 기계(drawn thread machine)]만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기계는 HS 8452호에서 제외되어 HS 8447호의 편직기로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가정형 재봉기(전동식의 것)(직진형)** HSK 8452.10-1010호 〔지그재그형〕 HSK 8452.10-1020호
〔프리암식〕 HSK 8452.10-1030호 〔기타〕 HSK 8452.10-1090호
**(수동식의 것)** HSK 8452.10-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84 자전거(Bicycyles and other cycles)



## 물품 개요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클래식 자전거, 로드 자전거, MTB 자전거, 픽시 자전거가 있다. 클래식 자전거는 일반 생활용 자전거를 말한다. 로드 자전거는 사이클이라고도 하며, 도로에서 빠른 스피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자전거이다. MTB는 산악용 자전거를 말한다. 굵직한 바퀴와 승차감을 위해 앞바퀴에 쿠션장치가 있다. 픽시 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것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가벼우며 잔고장이 적고 튼튼한 것이 특징이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자전거는 관세율표상 HS 8712호에 주로 분류되고 있다. 품목분류상으로는 자전거를 경기용, 화물운반용, 삼륜자전거, 그 밖의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다. 어린이용 자전거의 경우 이륜자전거는 HS 8712호에 분류되나, 어린이용 세발자전거는 '바퀴달린 완구'로 보아 HS 9503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경기용자전거 :** HSK 8712.0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8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7 | 8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0 | 0 | 0 | 0 |

**일반자전거**

〔삼륜자전거(어린이용은 제외)〕 : HSK 8712.00–9020호

〔이륜자전거(어린이용 포함)〕 : HSK 8712.00–909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8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7 | 8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0 | 0 | 0 | 0 |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 HSK 9503.00–11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0 | – | – | – | – | 10 | 10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엔진을 달은 자전거는 관세율표상 자전거로 분류하지 않는다.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에 해당되어 모터사이클(일명 오토바이)이 분류되는 HS 8711호에 분류되고 있다.

○ 자전거는 대부분 분해되어 수입되어 국내에서 조립되는데, 수입시 분해된 상태로 신고하여도 조립하여 자전거의 형태가 이루어지면, 각각의 자전거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완성된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다.

# 85 안경테 · 선글라스 · 고글



## 물품 개요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다양한 유명 브랜드와 모델을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주 전자상거래(일명 해외직구)가 이루어지는 품목이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안경테는 HS 9003호에 분류되고 선글라스는 HS 9004호에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안경테** (플라스틱제) HSK 9003.11–0000호

(그 밖의 재료, 귀금속을 사용한 것) HSK 9003.79–1000호

(그 밖의 재료, 기타) HSK 9003.79–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선글라스 〔귀금속을 사용한 것〕 HSK 9004.1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7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선글라스 〔기타〕 HSK 9004.1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7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모터사이클용, 수영, 스키 등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각종 '고글'도 HS 9004호에 분류되고 있다.

### 고글

〔귀금속을 사용한 것〕 HSK 9004.90–9010호 〔기타〕 HSK 9004.90–909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86 카메라



## 물품 개요

카메라는 광학식 카메라와 영사을 디지털 자료 형태로 변환하는 디지털카메라가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광학식 카메라는 HS 9006호에 분류되며, 디지털 카메라는 HS8525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광학식 카메라** (일반용이며 폭이 35㎜인 롤필름용) HSK 9006.53-909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3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2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 | 0 | 0 | 0 |

**디지털 카메라 :** HSK 8525.80-201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0 | – | – | – | – | 10 | 10 | - |

## 참고사항

○ 고급카메라(개당 가격이 200만원초과인 것)의 경우 개별소비세대상이며, 과세가격의 20%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한다.

〈세금 합산 예〉 A: 37만 400원 + 185만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예시금액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특세 | 주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300만원 | 기본 8 | 20 | 30 | – | – | 10 | 30.62 | A |
| 500만원 | 기본 8 | 20 | 30 | – | – | 10 | 38.25 | A |

# 87 레이저 제모기, 레이저 피부관리기



## 물품 개요

레이저 제모술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털을 제거하는 시술로서 멜라닌 색소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이들을 파괴시켜 털이 나지 않게 하는 시술방법이다. 최근에는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과 동일한 자가시술이 가능한 휴대용 레이저 제모기 및 여드름 · 주름개선 등 레이저 피부관리기가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레이저를 사용하는 기기로서 의료용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기기는 HS 9018호의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안과용 기기, 일반외과용 기기, 내과용 및 피부과용 기기를 구분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레이저 제모기, 레이저 피부관리기 :** HSK 9018.90–9071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7.1~)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0 | 0 | 5.6 | 3 | 4 | 0 | 4 |
| 2015년 | 0 | 0.7 | 0 | 0 | 4.8 | 2 | 3 | 0 | 2 |
| 2016년 | 0 | 0 | 0 | 0 | 4 | 1 | 2 | 0 | 0 |

# 88 손목시계



## 물품 개요

시계는 시각을 알려주거나 시간을 재는 기계를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계는 손목시계, 벽시계, 좌종시계이지만 이 외에도 해시계 · 물시계 · 회중시계 · 전자시계 등 각종 시계가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손목시계는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은 HS 9101호에, 케이스가 귀금속제가 아닌 것은 HS 9102호에 분류된다. 한편,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시계는 골동품으로서 HS 9706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손목시계**

**(케이스가 귀금속인 것)**

〔전기구동식으로서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HSK 9101.11–0000호

〔전기구동식으로서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HSK 9101.19–1000호

〔그 밖의 손목시계로서 자동권식(automatic winding)〕 HSK 9101.21–0000호

〔그 밖의 손목시계〕 HSK 9101.29–0000호

**(케이스가 귀금속제가 아닌 것)**

**전기구동식으로서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으로서,**

〔문자판 • 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한 것〕 HSK 9102.11–2000호

〔그 밖의 것으로서 밧데리 • 충전지 구동식〕 HSK 9102.11–9010호

〔기타〕 HSK 9102.11–9090호

**전기구동식으로서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으로서,**

〔밧데리 • 충전지 구동식〕 HSK 9102.12-1000호 〔기타〕 HSK 9102.12-909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한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세금 합산 예〉 A: 37만 400원 + 185만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예시금액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300만원 | 기본 8 | 20 | – | – | – | 10 | 30.62 | A |
| 500만원 | | | | | | | 38.25 | |
| 800만원 | | | | | | | 42.53 | |

* 개별소비세 =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 **20%**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30%**

# 89 악기류



## 물품 개요

악기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뉘며, 현악기는 현(鉉)의 떨림에 의해 소리를 내는 악기로서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하프가 있다. 관악기는 금속 · 나무 등의 관을 입으로 불어 관 속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하며 트럼펫, 색스폰, 플루트 등이 있다. 타악기는 손이나 채로 두드려 소리를 내는 악기로서 북, 심벌즈, 드럼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현악기 중 피아노 HS 9201호, 그 밖의 현악기는 HS 9202호에 분류되며, 관악기는 HS 9205호, 타악기는 HS 9206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바이올린 :** HSK 9202.1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통기타 :** HSK 9202.1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관악기**

〔트럼펫〕 HSK 9205.10-1000호 〔플루트〕 HSK 9205.90-1010호

〔색소폰〕 HSK 9205.90-103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타악기**

〔북〕 HSK 9206.00-1000호 〔드럼〕 HSK 9206.0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현악기 또는 타악기에 있어서 악기의 연주에 사용되는 활과 봉은 정정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악기와 함께 제시되고 명백히 악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악기와 같은 호에 분류된다. 그 외의 활과 봉은 악기의 부속품으로 보아 HS 9209호(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된다.

# 90 전자 악기류



## 물품 개요

전자악기는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를 말하며, 전자기타, 전자오르간, 전자아코디언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전자 악기류는 HS 9207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 전자 악기

〔전자기타〕 HSK 9207.90-1000호 〔전자바이올린〕 HSK 9207.9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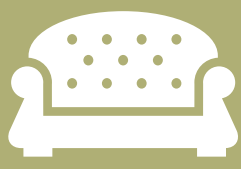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악기의 연주에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전기식 또는 전자식기기(특히 증폭기와 확성기)는 그 자체가 악기와 함께 조립된 것이 아닌 때에는 HS 9207호에서 제외되며 적절한 해당 호(예: 전자기기인 경우 제85류)에 분류된다.

# 91 가구류



## 물품 개요

전자상거래되는 가구류로는 차량용 의자, 소파, 탁자, 의자, 매트리스(침대용)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어린이용 탁자, 의자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가구류는 로 보아 HS 9401호부터 HS 9404호까지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차량용 의자 (영유아용 보조의자)** : HSK 9401.2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침대 매트리스 (라텍스, 매트리스폼)** : HSK 9404.2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3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2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 | 0 | 0 | 0 |

# 92 쿠션 · 베개 · 방석



## 물품 개요

쿠션, 베개, 방석은 주로 천(fabric) 이용한 커버와 각종 재료로 구성된 충전개로 구분된다. 쿠션, 베개, 방석은 각각 커버와 충전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있는 것과 커버만 분리가능한 것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쿠션, 베개, 방석은 커버와 충전재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것은 관세율표 HS 9404호에 분류되며, 커버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충전재는 HS 9404호에, 커버는 베갯잇은 HS 6302호에서 구성섬유의 종류에 따라 세분되며 쿠션이나 방석의 커버는 HS 6304호에서 구성섬유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쿠션, 베개, 방석 (일체형으로 된 것)** : HSK 9404.9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커버류

**(베갯잇)**

〔편물제로서 면으로 만든 것〕 HSK 6302.10–1000호

〔편물제로서 그 밖의 섬유재료로 만든 것〕 HSK 6302.10–9000호

〔날염된 것으로서 면으로 만든 것〕 HSK 6302.21–0000호

〔날염된 것으로서 인조섬유로 만든 것〕 HSK 6302.22–0000호

〔날염된 것으로서 그 밖의 섬유재료로 만든 것〕 HSK 6302.29–0000호

〔그 밖의 것〕 HSK 6302.39–0000호

**(쿠션커버, 방석커버)**

〔편물제〕 HSK 6304.91–0000호

〔그 밖의 물품으로 면으로 만든 것〕 HSK 6304.92–0000호

〔그 밖의 물품으로 합성섬유로 만든 것〕 HSK 6304.93–0000호

〔그 밖의 물품〕 HSK 6304.99–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베갯잇 중 편물제의 것으로서 면으로 된 것, 날염한 것으로서 인조섬유로 된 것: '14년 4.9%, '15년 3.3%, '16년 1.6%

# 93 완구



## 물품 개요

완구에는 인형, 기차, 악기(완구용), 퍼즐, 조립세트 등이 있다. 최근 육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재료, 예를 들어 원목으로 만든 교구가 시장에서 고가로 판매되는 등 전문화 · 고급화하는 추세이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완구는 관세율표에서 HS 9503호에 분류되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는 사람이나 동물을 모방한 완구,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바퀴가 달린 완구, 전기식 기차 등 축소모형, 조립식 완구, 완구용 악기, 퍼즐 등이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 어린이용으로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바퀴가 달린 완구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HSK 9503.00-1100호

〔스쿠터〕 HSK 9503.00-1200호 〔페달차〕 HSK 9503.00-1300호

〔인형용 차〕 HSK 9503.00-1400호 〔기타〕 HSK 9503.00-18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0 | – | – | – | – | 10 | 10 | - |

#### 사람모양의 인형

〔직물로 만든 것〕 HSK 9503.00-2110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HSK 9503.00-213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3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2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 | 0 | 0 | 0 |

〔고무로 만든 것〕 HSK 9503.00–2120호 〔도자제의 것〕 HSK 9503.00–2140호,
〔유리로 만든 것〕 HSK 9503.00–2150호 〔나무로 만든 것〕 HSK 9503.00–216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0 | – | – | – | – | 10 | 10 | - |

〔기타의 재료로 만든 것〕 HSK 9503.00–219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동물을 모방한 완구

**(속이 채워져 있는 것)**

〔직물로 만든 것〕 HSK 9503.00–3411호 〔기타 재료로 만든 것〕 HSK 9503.00–3419호
(기타) 〔직물로 만든 것〕 HSK 9503.00–3491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3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2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1 | 0 | 0 | 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HSK 9503.00–3493호 〔금속으로 만든 것〕 HSK 9503.00–3494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고무로 만든 것〕 HSK 9503.00–3492호 〔도자제의 것〕 HSK 9503.00–3495호,
〔유리로 만든 것〕 HSK 9503.00–3496호 〔나무로 만든 것〕 HSK 9503.00–3497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0 | – | – | – | – | 10 | 18.8 | - |

**전기식 기차 완구 :** HSK 9503.00–311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조립식 완구**

〔축소모형의 것〕 HSK 9503.00–3200호 〔그 밖의 조립식 완구〕 HSK 9503.00–33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양허 0 | – | – | – | – | 10 | 10 | - |

**완구용 악기류 :** HSK 9503.00–35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94 비디오 게임기



## 물품 개요

비디오 게임(video game)은 콘솔(console game)이라고도 하며, 전용 게임기를 텔레비전이나 모니터의 화면에 연결시켜 작동하는 게임을 말하며 흔히 오락실이라고 불리는 일정한 게임장에서 즐기는 아케이드 게임, 개인용 컴퓨터에서 CD 등의 저장장치에 수록된 게임물을 작동하여 즐기는 PC게임, 통신망을 통하여 서버에 접속하여 다수가 동시에 즐기는 온라인 게임과는 구별된다. 최근에는 소형화면을 갖추고 휴대할 수 있도록 개발된 비디오게임기가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은 바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비디오 게임기는 관세율표상 HS 9504호(9504.50)에 분류되며, 동전 · 지폐 · 카드 등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물품은 HS 9504.30호에 분류된다. HS 9405호에는 비디오 게임기에 전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예를 들면 케이스, 게임 카트리지, 게임 조종기, 핸들 등이 포함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 비디오 게임기

〔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 HSK 9504.50–1000호

〔기타〕 HSK 9504.5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95 골프용품(Golf equipments)



## 물품 개요

골프는 코스 위에 정지하여 있는 볼을 골프채로 쳐서 정해진 홀에 넣어 그 타수가 많고 적음으로 승부를 겨루는 운동경기이다. 경기는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차례로 규칙에 따라 골프채(Club)를 치면서 공을 친 횟수가 가정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된다. 골골 운동 시 사용되는 골프용품으로는 골프공, 골프채, 티(Tee), 볼마커(Markers), 골프백, 골프장갑, 골프화, 골프헤드커버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골프용품은 HS 9506.3호에 분류한다. 골프채, 골프공, 골프티(Tees)가 대표적인 물품이다. 골프백, 골프장갑, 골프의류, 골프화는 각각 품명이나 재질에 따라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골프채(완성품) :** HSK 9506.3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8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7 | 8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0 | 0 | 0 | 0 |

**골프공 :** HSK 9506.32-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8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7 | 8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0 | 0 | 0 | 0 |

**골프티(Tees) :** HSK 9506.39-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8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7 | 8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0 | 0 | 0 | 0 |

**골프가방(외부표면: 우레탄 합성피혁) :** HSK 4202.92-102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1.5 | 8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7 | 8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5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골프채가 분해되어 수입된 경우 '골프채'로 분류하지 않고 '골프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506.39-1000호에 분류하고 있다. 다만, 관세 및 부가세, 그리고 FTA 특혜관세율은 '골프채'와 동일하다.

○ 골프장갑은 장갑류의 품목분류와 같으므로 장갑류를 참조하면 된다.

# 96 스키용품(Ski supplies)



## 물품 개요

주요 스키용품으로는 스키 플레이트, 스키폴, 바인딩, 스노우보드, 스키복, 스키부츠, 고글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스키장비(Snow-ski equipment)는 HS 9506호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에 분류된다. 그 밖의 스키용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스키복은 의류에 분류되고, 스키부츠는 신발류(제64류)에 분류되며, 고글은 HS 9004호의 '안경과 고글'로 분류되고 있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스키 :** HSK 9506.11–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스키바인딩 :** HSK 9506.12–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스키폴, 스노우보드 : HSK 9506.19–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스키부츠, 스노보드부츠

〔갑피: 플라스틱/ 바깥바닥 고무 • 플라스틱〕 HSK 6402.12–0000호

〔갑피: 가죽/ 바깥바닥 고무 • 플라스틱〕 HSK 6403.12–0000호

〔갑피: 섬유재료/ 바깥바닥 고무 • 플라스틱〕 HSK 6404.12–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스키슈트(스키복)

〔인조섬유〕 (편물) HSK 6112.20–1000호 (직물) HSK 6211.20–1000호

〔기타섬유〕 (편물) HSK 6112.20–9000호 (직물) HSK 6211.20–9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25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인조섬유의 종류로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레이온 등이 있다.

# 97 야구용품



## 물품 개요

야구용품으로는 배트, 글러브, 볼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배트와 볼은 운동용구로 보아 HS 9506호에 분류되며, 야구글러브는 장갑류로 보아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합성피혁)제의 경우 HS 3926.20호에 분류되고 가죽제의 경우 HS 4203.21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야구배트 :** HSK 9506.99-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야구볼 :** HSK 9506.69-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야구글러브(가죽) :** HSK 4203.21–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야구글러브(플라스틱 합성피혁) :** HSK 3926.20–0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13 | – | – | – | – | 10 | 24.3 | -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2.4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1.2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쉼터

**미국 베이브루스가 사용한 야구배트는 운동용구일까?**
**–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례 –**

미국 야구사의 전설적인 인물인 베이브 루스(babe ruth)*가 사용한 야구배트를 관세율표상 운동용구(HS 9506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수집품(HS 9705호, 관세율 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베이브 루스가 사용한 야구배트가 운동용구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희소성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수집품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운동용구를 볼 수 없고 관세율이 없는 수집품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 베이브 루스(1895~1948년)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22시즌(1914~1935년)을 뛰며 당시 최고 기록인 통산 714개의 홈런을 기록하였다

# 98 라켓



## 물품 개요

운동용구로 사용되는 라켓 중 대표적인 것은 테니스 라켓, 배드민턴 라켓, 탁구라켓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운동용구는 일반적으로 HS 9506호에 분류되고 있다. 탁구라켓은 HS 9506.40호의 '탁구용구'에 분류되며, 테니스용과 배드민턴용 라켓은 HS 9506.51호 및 HS 9506.59호에 각각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라켓 (탁구 라켓)** HSK 9506.40-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참고사항

○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 라켓의 경우 라켓에 줄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 같은 품목번호로 분류된다.

# 99 낚시용품

## 물품 개요

낚시용품으로는 낚싯대와 낚시용구가 있으며, 낚시용구의 종류로는 릴과 릴부착구, 인조미끼(예: 물고기 · 파리 · 곤충 또는 벌레 모양을 한 것), 스피닝베이트(spinning bait), 낚시찌, 낚싯대용의 종, 낚싯바늘, 인조미끼를 끼운 낚싯바늘, 낚시용 망 등이 있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낚시용품은 HS 9507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 낚싯

〔유리섬유로 만든 것〕 HSK 9507.10–1000호 〔카본으로 만든 것〕 HSK 9507.10–2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낚시용구 : HSK 9507.9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낚싯바늘: HSK 9507.20–0000호, 낚시 릴: HSK 9507.30–0000호

# 100 만년필 · 샤프펜슬



## 물품 개요

만년필은 펜축 속에 잉크를 저장하고, 사용할 때 모세관현상을 이용해서 잉크가 알맞게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진 필기용구를 말하며, 샤프펜슬은 프로렐링 펜슬 또는 미케니컬 펜슬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샤프심이라 불리는 가는 연필심을 끝으로 밀어내어 깍을 필요가 없는 연필의 일종이다.

## 품목 분류 및 관세율

###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만년필'과 '샤프펜슬(프로펠링 펜슬)'은 HS 9608호에 분류된다.

### 주요품목 및 관세율

**만년필 :** HSK 9608.3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샤프펜슬 :** HSK 9608.40-1000호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 기본 8 | – | – | – | – | 10 | 18.8 | 20 |

– FTA 관세율

| FTA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EFTA | 미국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
| 2014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5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6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해외 직접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품목분류 100선

**인쇄:** 2014년 9월 1일

**발행:** 2014년 9월 1일

**발행인:**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정일석

**기획 · 편집:** 세원심사과 과장 이진희
백도선, 곽재석, 임현웅, 이지선

**디자인 · 인쇄:** 오성문화(02-333-5909)

**e북 제작:** e북팩토리(031-975-0301)

* 본 책은 해외직접구매물품의 일반적인 품목분류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제작한 안내용 책자로

본 책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특정물품의 품목분류 등 그 밖의 해외직접구매 관련 정보는 해당 부서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